



어떻게 기업에 저항할 것인가?

- 전쟁없는세상 (최정민 활동가)
저항 상대, 국가에서 기업으로

-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국제, 국내 시스템 및 법률들

- 반올림 (이중란 노무사)
갑 오브 갑 삼성에 맞서기

-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차장)
다국적기업, 특히 해외에 투자한 한국기업에 의해 일어나는 각종 반인권, 반노 반환경적인 행위들을
고발하고 기업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운동

- 참여연대 (이승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재벌기업들의 외국돈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의 개혁을 위한 발걸음, 소액주주운동

- 무기제로 (박승호 활동가)
한화와 풍산에 저항하는 활동, 죽음의 비 확산탄을 금지하라

- 좋은기업센터 (정란아 활동가)
기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나용 활동가)
팔레스타인 가옥파괴에 사용되는 현대중공업의 굴삭기

7월 24일(수) 3시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자리가 많지 않으니 꼭
사전신청을 해 주세요.
선착순으로 마감하겠습니다.

peace@WithoutWar.org



Hanwha

POONGSAN

Coca-Cola



어떻게 기업에 대항해 싸울 것인가

오리 (전쟁없는세상, jungmin.duck@gmail.com)

우리는 흔히 ‘데모’하면 비민주적 정부권력(법률, 조직,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단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선출한 사람(기관)들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최근 기업들에 의한 횡포는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 안전, 경제적 안보, 삶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업에는 나의 가족, 친구들처럼 좋은 사람들도 많이 일하고 있다. 또 모든 기업들이 개인들의 삶을 짓밟고 이윤을 착취하는 것도 아니다. 가끔 나름의 기준과 사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는 회사도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말 대다수의 기업과 기업의 총수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들을 희생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의 (초국적)기업은 어떤 인간보다도, 어떤 정부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작동되는 규칙은 오로지 하나, ‘이윤’이다. 삼성은 아직도 발암물질 노출에 따른 직업병과 업무연관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한화와 풍산은 자신들은 정부에서 시키는 일이니까 한다면 왜 자기들 가지고 난리냐고 한다. 현대중공업은 돈만 된다면 팔레스타인 가옥을 부수는 것쯤은 별다른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 같다. 사실 지금처럼 기업을 향한 우리들의 행동이 절실한 적이 없다. 이미 전 세계에서는 우리 시대의 골리앗에 맞서는 근사한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고 어떤 경우는 골리앗을 상대로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다윗의 승리를 거두는 경우도 있었다.

기업에 저항하는 운동은 20세기 중반기부터 시작되어 최근 수 십 년 간 노동조합, 환경, 사회정의, 소비자운동의 시민단체들에 의해 정교해졌다. 기업에 저항하는 운동의 목표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통해 기업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관행을 고발하여 기업이 이러한 행동이나 관행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다. 단체들과 개인 활동가들은 기업에 저항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으며 어떤 캠페인들은 수년간 지속되었고 다양한 결과를 낳았다. 보이콧, 주주총회 행동, 기업이미지 공격(기업브랜드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 대중매체 이용) 등이 주로 이용되었던 전략들이고 최근에는 기업들이 점차 초국적화 됨에 따라 기업 감시, 기업윤리 등등 기업 연구 및 감시에 초점을 맞춘 소위 전문 NGO 등장하고 정책 혹은 법을 바꾸거나 도입하는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운동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기업의 양상도 계속 발전해 왔다는 것은 별로 놀라울 것도 없는 사실이다.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에 비판적인 활동을 벌이는 활동가들에게 고소, 고발을 남발하면서 한 편으론 자선, 구호 사업에 대한 기업의 기부를 강조하고 나무심고, 우물파고, 텔레비전, 버스, 잡지 등을 통해 떠들썩하게 자사 홍보영상을 내보내는 것이다. 이들은 고가의 컨설팅 금액을 내고 노조활동가들과 지역운동가들을 어떻게 하면 말려죽일까 전략을 고안하고 있다.

우리가 기업에 저항하는 캠페인을 할 때 생각할 것은

-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 사물, 법인체이다.
- 기업은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 사람(대중)에 의해 사람(대중)에 복무하도록 창조된 것이다.
- 기업은 권리를 갖지 않는다. 권리를 갖는 것은 사람이다. 기업은 오로지 사람들이 부여한 특권만을 갖을 뿐이며 시민들은 이것을 다시 뺏을 수 있다.

기업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데모(행동)를 조직하는 것 :

- 목표를 구체화 하기 : 우리는 한꺼번에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우리편 늘리기 : 어떻게 우리에게 대한 지지를 확장해 나갈 것인가?

- 전략 세우기 : 우리의 힘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행동 고르기

둘째는 비즈니스와 시장을 위한 공공의 규칙을 만드는 것 :

- 비즈니스와 시장에서의 개입이 정당화 될 때는 언제인가? : 우리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의 지갑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자 할 때, 환경을 지키고자 할 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할 때, 시장원리가 도입되어야 할 때와 말아야 할 때에 관한 제한을 두어야만 할 때,

- 어떻게? : 각종 규제 조치,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려 하는 기업들에 금융혜택 주기, 소비자운동의 활성화 등을 통한 기업 감시, 정부가 기업 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사법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민사책임, 형사책임, 사기업vs공기업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나 의료, 상수도 등의 우리 삶에 기본적인 부분들의 공공화 주장,

- 세계화의 도전 : 우리의 운동 역시 어떻게 세계화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 기업의 돈줄을 죄기 : 민영화 반대·시스템의 재사회화 지지, 보이콧·지역상품(중소기업상품) 구매하기,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공적자금 지원·보조금 지급 등에 저항하기

- 선거/민주주의 시스템 이용하기 : 기업이 선거자금을 대지 못하도록 공공조달하기,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양당정치에서 벗어나기, 유권자들의 손에 직접적인 결정권을 주는 주민발의·국민투표, 기업의 권리와 정의를 제한하기, 기업을 비호하는 법 철폐하기, 지역사회 및 지역정부를 상대로 기업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현지 법령 만들기

- 조직에 대한 공격 :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미디어를 민주화시키기,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대학들을 민주화시키기, 국제적 기업화에 저항하기

- 노동자의 권리 : 주 30시간 노동제, 불안전노동 철폐 등

- 인간의 얼굴을 한 기업의 썸얼 까발리기

<사례연구>

제2차 물전쟁 : 벡텔 VS 볼리비아 민중

1. 상황

1997년 세계은행은 볼리비아 정부가 가장 큰 도시 두 곳(El Alto/La Paz와 the city of Cochabamba)의 공공수자원시스템을 민영화한다는 조건으로 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통지. 1999년 9월, 단 하나의 입찰자만으로 비밀리에 진행된 경매에서 볼리비아 정부는 코차밤바(Cochabamba)의 상수도를 캘리포니아의 엔지니어링 초국적 기업인 벡텔에게 넘김.

몇 주 내에 벡텔은 수도세를 50% 이상 인상하였고 이는 코차밤바 물반란(Cochabamba Water Revolt)이라 알려진 전 도시 반대저항을 촉발시킴. 2000년 4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가 17세 소년 Victor Hugo Daza를 죽이고 100명 이상이 다치자 코차밤바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벡텔은 볼리비아를 떠나야만 했음.

18개월 후 벡텔과 공동투자자인 스페인 Abengoa은 볼리비아를 상대로 5,000만 달러(한화 약 560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 이후 4년 간 벡텔과 Abengoa는 계속되는 데모와 기업 이미지의 실추, 5개 대륙으로부터 가해지는 공공의 요구 때문에 소송을 취하해야만 했음.

2006년 1월 19일, 벡텔과 Abengoa의 대표단은 볼리비아로 와서 2볼리비아노(한화 약 340원)의 일부 지급으로 소송을 취하한다는 합의서에 서명.

2. 전략

캠페인의 당면한 목표는 간단. 볼리비아 물소비자들이 벡텔에 수백만 달러를 결제하도록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전략적 측면에서 애시당초 벡텔-볼리비아 소송을 있게 한 세계은행의 정책 및 투자기관의 부정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과 Coordinadora de Defensa del Agua y de la Vida(벡텔에 대항하는 투쟁을 이끈 그룹)에 대한 지원과 같은 더 넓은 목표를 포함하는 것.

초기에 캠페인은 세계은행 재판소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함. ‘우리는 여론의 재판소로 장소를 바꾸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 NGO와 사회운동으로서의 우리가 벡텔보다 더 큰 권력을 갖는 곳이다. 우리의 목표는 벡텔이 항복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성공하기에 더 나은 방법이었다. 이것은 다른 많은 기업들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 비록 너희가 세계은행의 재판소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게 될테니.’ 벡텔과 같은 회사를 위한 규칙이 존재하는 재판소 대신 캠페인은 결과에 대해 적은 통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회사를 밀어 넣은 셈.

그 다음 단계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포기할 지를 결정할 수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자들을 알아보는 것. 벡텔사는 네슬레나 나이키, 제너럴 일렉트릭과 다르게 보이콧을 할 수 있는 소비상품을 만들지 않았음.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압력을 넣을 투자자도 존재하지 않음. 그래서 캠페인은 CEO이자 회사 창업자의 증손자인 Riley Bechtel에게 초점을 맞추게 됨. 캠페이너들은 그의 개인 메일에 엄청난 양의 항의메일을 보내고 잡지 등을 통해 찾아낸 정보로 개인으로서 그에 대한 프로필을 작성함. 나중에 캠페인은 이 전략이 꽤나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됨. ‘2볼리비아노에 사건을 합의보고 난 후 볼리비아 협상가가 얘기하기를 Riley Bechtel이 소송을 취하도록 개인적으로 개입했다고 말했다.’

3. 메시지 전달하기, 캠페인 구상하기

벡텔에 저항하는 캠페인이 말해주는 것은 종종 도덕적 측면에서 캠페인을 구상하라는 것.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물반란의 주제는 새총을 들고 있는 한 여인이 무장한 전경들에게 위압당하는 강력한 이미지 등을 통해서 아이콘화 됨. 이러한 메시지는 이후 활동에서도 계속되었는데 볼리비아 민중들 VS 부자 초국적 기업. ‘벡텔이 볼리비아로부터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점심을 먹기도 전에 벌수 있는 돈이지만 볼리비아에서는 시골에 1,200명의 새로운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정도다.’와 같은 문장을 이용 캠페이너들은 직접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설득. (이것은 또한 “응호 수학”의 한 예.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숫자를 병치하고 추상적인 수치를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알아보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옮기는 것.)

4. 조직화, 의사결정 과정

벡텔 캠페인은 공식적인 연대체를 구성하거나 메일링리스트, 전화회의와 같은 툴을 사용하지는 않았음. 볼리비아 조직가들과 전 세계 활동가들의 연대는 주로 볼리비아에 살고 있으면서 캠페인에 개인적, 조직적 연대를 하고 있는 개인들(볼리비아인들과 외국인들 모두)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짐. 캠페인에서 의사결정은 대개 이메일, 전화 등으로 볼리비아 기반의 네트워크와 전 세계의 동지들이 필요할 때마다 즉석으로 이루어졌음. 세계은행 재판소로 탄원서를 보낼 때 어떤 단체 이름으로 할 것인가 등 전략적인 결정들은 Coordinadora(조정위원회)에서 미리 이루어짐.

캠페인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중앙집중적으로 계획되지 않았음. 볼리비아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는 Riley Bechtel에게 메일폭탄을 보내는 등의 구체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고 세계은행 재판소에 시민사회 탄원서를 보내도록 다른 단체들을 접촉. 그러나 동시에 첫 번째 물전쟁이 전 세계의 커다란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캠페인의 일정한 역할도 있었음. 전 세계의 다양한 그룹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볼리비아의 단체에 연락을 취함. 이렇게 해서 암스테르담과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행동이 조직되었던 것. 모든 아이디어들이 코차밤바로부터 만들어서 전달된 것이 아님. 하지만 기업, 소송사건, 캠페인에서 무슨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등의 전반적인 정보는 그들이 제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연대단위에 제공됨.

전술

● 직접행동

샌프란시스코의 활동가들은 벡텔 본사를 점령하고 폐쇄. 암스테르담에서는 활동가들이 벡텔의 네덜란드가짜본사(네덜란드와 볼리비아 사이의 투자협정을 활용하는 데 사용됨)의 담을 타고 넘어갔으며 물전쟁 때 죽은 17세 소년의 이름을 따 거리 이름을 다시 지음.

● 소송

Earthjustice는 재판소에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탄원서를 모으는 활동을 함. 탄원서는 거부되었으나 조직화와 관련한 유용한 툴이 됨. 이것으로 소송을 담당한 그룹은 시민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세계은행에 대한 시민들의 탄원’을 조직할 수 있었음. 41개국 300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하였고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벡텔의 변호사는 100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함.

● 정부대응

캘리포니아 **Public Citizen**은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의회에서 벡텔사에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 미디어

The Democracy Center와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및 다른 조직들은 미국과 볼리비아 언론에게 소송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제공함.

5. 문제점

캠페인은 확실한 승리를 얻기까지 3년의 기간 동안 많은 문제에 직면. 가장 어려운 도전은 캠페인을 계속적으로 살아있고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 세계은행 소송은 매우 길고 느리게 움직였으며 대중에게 드러내는 것이 힘들었음. 전략 형성과정을 진실되게 유지하고 공개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는 것 또한 어려웠던 점. 캠페인에 참여하는 다양한 조직들은 각자 서로 다른 배경, 이해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음. 각각의 결정에서 가능한 전략이행에 관해 집단적으로 구체적이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 이것을 통해 연대캠페인은 대중대중 깊이 생각지도 않고 결정들을 승인해주는 **Coordinadora**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음. 솔직한 설명과 열린 토론은 어떤 결정도 서둘러 처리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 회사로부터의 법적인 위협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캠페이너들이 전체 운동 과정에서 좀 더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라면 더 좋았을 것.

우리가 배울 점

- 개인적으로 만들라

Riley Bechtel에 대한 집중은 정곡을 찌른 셈 - 캠페인은 회사 일반을 공략하지 않았고 소송을 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의사결정자를 향했다.

- 자신의 장점을 이용하라

벡텔에 대항하는 싸움은 매우 다른 전술들과 조직문화가 결합된 것. 코차밤바시를 거리로 나서게 한 용기, 볼리비아 폴뿌리 조직들의 세련됨과 힘은 벡텔을 떠나게 만들었음. 회사가 두 번째로 볼리비아 민중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시도했을 때 국제네트워크는 다시 한 번 벡텔이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하도록 다양한 힘을 이용해 압박을 가함.

- 전장을 선택하라

캠페이너들은 세계은행의 무역법원이 초국적 기업을 상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아님을 알았다. 회사가 강한 재판소에서 캠페이너들의 힘은 약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들은 전쟁을 회사가 약한 공간으로 옮기기로 결심함.

- 그들의 섹터를 엉망으로 만들어라

기업들은 압도적인 단 하나의 논리에 의해 의사결정을 함. 캠페인은 그 경제적 미적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 특히 공공 이미지에 대한 손상은 기업이 미래에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도록 함.

- 순간을 포착하라

두 번째 물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반세계화, 반기업 운동의 일환이었고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상황의 큰 변화와 함께 그것으로부터 많은 이득을 보았고 많은 국제적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음. 캠페이너들은 이러한 미디어와 활동가들의 세계적 주목을 캠페인의 중요한 힘으로 전환할 수 있었음.

E.On의 스위치를 끄다 : 영국의 새로운 화석에너지에 대항한 투쟁

1. 상황

2006년 독일 에너지기업인 E.On은 새로운 화력발전소로 잉글랜드 남동쪽 Kingsnorth 화력발전소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발표. 2012년 건설을 시작해서 2015년 완공한다는 계획. 기업의 타이밍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영국에서 풀뿌리 기후변화 운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석탄을 태우는 새로운 거대한 시설은 그들이 영국의 미래 에너지를 생각할 때 별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 Kingsnorth는 화력발전소에 대항하는 캠페인의 상징이 되었음.

풀뿌리그룹과 NGO들은 2년간의 캠페인을 벌임. 캠페이너들은 온라인 선언에서부터 대규모 시민불복종까지 다양한 행동들을 했고 어떤 행동에서는 발전소를 완전히 폐쇄시키기도 하였음. 2009년 말로 향하던 시점, E.On은 Kingsnorth 발전소에 대한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 영국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전망이 밝은 미래 기술이나 현재 가동 중인 어떤 발전소에서든 성공적으로 이행된 적이 없음)’ 없이는 새로운 화력발전소 개발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발표.

2. 전략

Kingsnorth 발전소의 확장을 막는 것은 핵심적이고 즉각적인 캠페인의 목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기후변화 운동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우려라는 맥락에서 Kingsnorth 캠페인은 또한 E.On과 같은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윤이 바로 기후변화의 값을 치르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킴. 캠페인은 기업을 직접적으로 상대한 대중 행동을 조직했으나 영국 정부 또한 이차적인 목표였음. 이 캠페인은 영국의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바꾸도록 하는 보다 커다란 노력의 일부. 또한 캠페인을 준비 중인 다른 화력발전소들이 더 있었음. 따라서 캠페인은 Kingsnorth 발전소가 지어지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프로젝트들도 더 이상 실행되지 못하게 하는 환경 관련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기도 했음. 국가적인 에너지정책에 더해 정부는 E.On의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었음. 그리고 국가는 또한 영국에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시설을 짓기 위해 에너지기업에 기금을 댈 수백만 달러 경쟁(E.On도 지원)을 담당하고 있기도 함.

캠페인은 E.On의 계획에 대한 대중적인 반대를 구축하고 입증하는 운동의 중심. Camp for Climate Action이 그 시기 내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Kingsnorth 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영국의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것은 E.On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들의 브랜드를 공략하라, 그들의 작업을 방해하라, 그리고 그들의 공급망을 겨냥하라. 우리는 E.On이 어디에서 활동하건 그들과 마주해야 한다.’ 사전 대책을 강구해 회사와 맞서는 것 이외에도 활동가들은 FA컵에 대한 E.On의 스폰서십,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려는 E.On의 노력, Kingsnorth 발전소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가디언이 주최하는 기후변화회의에 대한 스폰서십 등 현존하는 기회들을 활용함.

3. 메시지 전달하기, 캠페인 구상하기

캠페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참여하고 있는 그룹만큼 다양. Camp for Climate Action과 Rising Tide UK는 ‘E.On에 경고한다’와 같은 언어를 쓰면서 합의되지 않은 방식을 취했음. World Development Movement와 같은 조직들은 ‘새로운 발전소가 탄자니아보다 더 많은 CO2를 배출하게

되고 20,000명의 사람들을 홈리스로 만들며 1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건기에 물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등의 극적인 수치들을 이용, 기후변화가 제3세계에 가져올 막대한 영향에 초점.

캠페인은 또한 풍자적이고 실랄한 유머를 사용. 2008년 E.On에 저항하는 3일 간의 행동에서 E.On 사무실 밖에서 '청소부'들이 화석이 깨끗해지도록 닦는 행동부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영국 불독'이라는 게임, 산타 패거리들의 E.On 사무실 습격 행동 등 많은 행동들이 풍자적이었음. 아마도 가장 웃긴 행동은 One-inch Tall Climate Change 캠페이너들이 레고랜드에 있는 Kingsnorth 모형을 '점령'한 일. 이 레고랜드는 E.On의 스폰서로 만들어짐. 당일 인디미디어 리포트에 따르면 '탑의 아래로 '기후변화 그만'이라고 씌어진 배너를 공개하기 위해 여섯 명의 캠페이너들이 아침 11시경 건물 꼭대기에 모습을 보였다. 레고 경찰은 레고 경찰 헬리콥터와 함께 탑 아래에 정렬해 있다... 캠페이너도 경찰도 말을 하지 않았다. 왜냐면 모두가 레고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4. 조직화, 의사결정 과정

Kingsnorth 캠페인 연합의 조직구조는 공식, 비공식 링크로 다양. 첫 번째 캠페인의 핵심그룹은 주요 환경, 개발 NGO의 캠페이너들로 매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이용해 회의를 함. 두 번째는 공식적인 Stop Climate Chaos Coalition이었는데 이 연대조직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영국 국내 석탄 및 기후변화 활동을 수입활동으로 하지 않아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 제정과 관련해서는 큰 단체들은 기부금을 내고 작은 단체들은 유럽의 기후변화 활동에 자금을 대는 European Climate Foundation과 같은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음. 마지막은 주로 Climate Camp 형태의 풀뿌리. 그들은 큰 NGO들과의 끈을 갖고 동시에 전적으로 그들 스스로 움직였고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사용. 이 세 부분이 모두 합쳐져 강력한 조직이 되었음.

전략을 공유하는 것은 대부분 핵심그룹들이 먼저 논의하고 보다 넓은 네트워크로 제안하는 방식. '캠페인이 계속되면서(2006년에 시작) 일정한 단계들로 들어서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새로운 계획이 요구되었다. 우리는 기업과 정치 모두에 대응해야 했다. 전반적으로 핵심그룹은 전략을 세우고 합의를 위해 보다 넓은 그룹에 제안하고 각 그룹의 참여도에 따라 가능한 선택지를 두고 토론을 했다. 만약 어떤 그룹이 근본적으로 찬성하지 않으면 참여를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Climate Camp와 같은 조직들은 그들만의 전략에 따라 행동했다. 지배적인 그룹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했지만 함께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목표에 부합했다.'

전술

● 직접행동

캠페인 기간 내내 E.On의 사무실들은 습격당했고 점령당함. 2008년 8월, 4,000명의 사람들이 발전소를 비폭력적으로 중단시킬 목적을 가지고 Kingsnorth에 캠프를 차림. 그린피스는 수상의 이름이 새겨진 굴뚝 중 하나에 페인트칠을 하고 발전소에 도킹하는 석탄 수송선을 멈추는 시도를 하는 등 세간의 이목을 끄는 행동으로 Kingsnorth를 겨냥. 캠페인에서 가장 악명 높은 행동은 활동가 한 명이 Kingsnorth 보안체계를 뚫고 붙잡히지 않은 채 'No New Coal'이라는 배너를 걸고 발전소 전체를 멈추게 한 것. 이러한 노력들은 위장잡입 및 다른 E.On 발전소의 평화적인 폐쇄를 계획하던 활동가들의 대규모 선제 연행과 같은 경찰의 강력한 대응과 마주함.

● 대중 집회

NGO들은 발전소 주변에 인간사슬을 잇기 위해 1,000명의 사람들을 조직했고 회사의 본부가 있는 코벳트리에서는 1,200명의 사람들이 또 다른 시위를 벌임.

- 온라인 조직화

단체들 중 몇몇은 'E.On F.off'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회사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을 조직. 그린피스는 'The Big If'를 통해 만약 영국에 새로운 화석연료가 개발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을 조직. 이 선언은 그에 참여한 정치인들에게 투표하지 않겠다에서부터 기후변화장관에게 더러운 속옷을 보내겠다는 선언까지 다양.

- 정부 대상

영국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인 Ed Miliband가 '석탄을 정리한 남자'로 알려지길 원한다는 말을 했을 때 그는 영국 기후변화운동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본 것.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행동들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없이는 영국에 새로운 화력발전소는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선언을 가능케 함. '그 기술은 아직 증명되지도 않았고 정부의 보조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금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 활동가들의 재판

E.On 캠페인과 관련한 재판은 기후변화 문제와 캠페이너들에 대한 대중과 미디어의 주목을 끄는 하나의 톨. 첫 번째 재판은 Kingsnorth 굴뚝을 색칠한 여섯 명의 그린피스 활동가들. 그들은 '필요성'이 있었다는 법적 방어를 하였고 그것이 기후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자신들의 활동이 옹호될 수 있다는 주장.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NASA 기후관련 과학자 James Hansen과 같은 세간에 잘 알려진 증인들을 소환. 영화제작자 Nick Broomfield는 이 사례에 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재판은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 광범위하게 보도 되었음. 배심원단은 결국 활동가들이 무죄라고 선고. 두 번째 재판은 또 다른 E.On 발전소를 비폭력적으로 점거하려고 했던 활동가들. 모의한 죄에 대해 유죄였지만 재판에서 위장잡입 경찰과 사설보안업체가 기후변화운동에 침투했던 정황이 드러났고 자연히 다른 모든 기소 내용들도 기각.

5. 문제점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한 그룹들 사이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행계획을 조직하는 것은 주요한 도전. 영국의 석탄화력발전을 둘러싼 정책의 복잡성 또한 어려웠던 점.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은 화력발전을 대체할 해결방안으로 매우 유망했기 때문에 '화석'을 태우는 것 = 위험한 기후변화'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어려워졌음.

우리가 배울 점

- 구체적인 상징을 만들라

Kingsnorth 캠페인은 영국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우려를 증폭시킴. 캠페인은 하나의 발전소의 운명보다 캠페인의 관심사를 훨씬 높게 만들면서 Kingsnorth 캠페인이 영국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하나의 바로미터로 작용.

- 차이를 넘어 활동하라

Kingsnorth 캠페인의 굉장한 강점 중 하나는 내부적으로 정치적 연결을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환경운동단체들부터 반자본주의 기후정의 그룹들까지 참여한 그룹들의 다양함. 이러한 정치적 다양함을 포

괄하는 연합을 구성한다는 것은 명백히 도전적. 하지만 또한 캠페이너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기업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들을 사용할 수 있었음.

- 권력을 풍자하라

Kingsnorth 캠페인의 메시지가 항상 웃기기만 한 것은 아니었음. 하지만 창의적이고 통렬하게 웃긴 행동으로 유명.

- 고정되지 말고 미리 계획하라

Kingsnorth 캠페이너들은 시간을 내서 전략을 계획하는 데 신경을 썼음. 하지만 또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기존 계획에 간혀 그 기회를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유연. 캠페인은 계획한 만큼 행운이 따라주었으나 이렇게 긴 타임라인에서는 단계별 법근법과 모듈화가 필수적.

※ 위 사례들은 'The Democracy Center'의 기업 캠페이너들을 위한 자료집 'Beating Goliath'의 자료 중 일부를 번역한 것임.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와 대응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목차>

I. 다국적 기업과 인권침해 : 인권의 초국가적 접근의 필요성

II. 국내적 대응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슈에 가스 프로젝트 사례 관련 2008. 4. 17.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 기업에 대한 민사적 대응 (연락 사무소 혹은 지점의 경우)

[국제사법]

가. 국제적 재판관할권

나. 준거법

3. 기업에 대한 민사적 대응 (현지법인 혹은 합작회사의 경우)

[민법]

가. 법인격 부인의 법리

나. 공동불법행위책임

다. 사용자책임

라. 대리인 책임

4. 기업에 대한 형사적 대응

가.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나. 형사특별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다. 법인의 범죄능력 및 처벌

III. 국제적 대응

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국내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 NCP) 이의제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2011. 10. 6. 결정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연락사무소(NCP) 구성·운영 상황 개선권고]

[까비페 섬유공장 노조탄압 사례 관련 2007. 9. 3. NCP 이의신청]

[슈에 가스 프로젝트 관련 2008. 10. 29. NCP 이의신청]

[오디사 제철소 프로젝트 사례 관련 2012. 10. 18. NCP 이의신청]

2. 유엔인권메커니즘 대응

가. 한국의 국제인권법적 의무의 범위

나. 유엔인권권고의 의의

[200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미국에 대한 최종견해]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최종견해]

[2012년 유엔인권위원회(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의 독일에 대한 최종견해]

3.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과 유엔 인권과 다국적 기업 및 기타 비즈니스 기업 사안에 관한 워킹그룹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I. 다국적 기업과 인권침해 : 인권의 초국가적 접근의 필요성

인권의 '초국가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① 이슈의 초국가성 : 이주, 난민 및 인신매매(초국경이동 및 국적), 다국적기업(활동공간 및 관련주체) 등
- ② 구제수단의 초국가성 : 국내구제절차 및 유엔인권기구 기타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구제메커니즘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인권조약기구, 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 ③ 인권 자체의 초국가성 : 국내/아시아 법제 개선 및 소송 등에서 국제/비교/국내인권법 연구조사의 필요성
- ④ 인권운동의 초국가성 : 국내/아시아 공통 인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상호작용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현지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지형은 다국적 기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우 다국적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가 약한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 자원은 풍부하지만 독재권력이나 무력충돌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저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침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한다. 현재로서는 다국적 기업에게 국제인권기준을 강제할 국제적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다국적 기업의 인권문제는 그 심각성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고, 선주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 강제(아동)노동, 노동3권, 환경파괴, 병력/사설 경비, 부정부패 등 거의 모든 구조적인 인권침해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결국 다국적 기업, 해외한국기업의 현지 인권침해와 이에 대한 대응의 문제도 국내법, 외국법, 국제사법, 국제법 혹은 국제기준 등 모든 국내외 법제의 적용이 요구되고 국제적인 공동 활동이 필요한 전형적인 초국가적 인권 문제다.

II. 국내적 대응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

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슈에 가스 프로젝트 사례 관련 2008년 4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진정인:

개인: 한국거주 버마인 2인

단체: 국제민주연대, 나와우리, 버마민주화를 지원하는 모임, 버마민족민주동맹(자유지역) 한국지부, 미얀마행동, 새사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 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환경연합

주 요구 내용:

- ①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방지하기 위한 정책권고 절차에 착수할 것
- ②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정부의 슈에 프로젝트에의 관여 결과 그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위험을 조사해야 할 것.

2. 기업에 대한 민사적 대응 (연락 사무소 혹은 지점의 경우)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10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불법행위) ①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

②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국제적 재판관할권

국제사법에 의하면 외국에서의 한국기업과 외국인간의 법률관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규정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은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다른 외국기업 등과 공동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여기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에 대하여 한국의 국내법원은 원칙적으로 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등에 보통재판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수집의 용이성이나 소송수행의 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앞서 본 민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분쟁이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지점의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 맞다 할 것이다.”¹⁾

나. 준거법

한국의 국내법원에 국제적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 재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이 무엇이어서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준거법이 문제, 즉 국제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불법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이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및 외국법의 적용 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이나 범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의 준거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행한 외국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그 준거법이 한국법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하겠다.

국제사법은 특별규정으로 제32조 제4항에서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법에서 보장되는 손해배상의 성질이나 범위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국제사법 제7조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강행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신용장금지급청구.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른바 단순한 강행법규가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를 말한다.²⁾ 국제사법 제10조는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한국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기업에 대한 민사적 대응 (현지법인 혹은 합작회사의 경우)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게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가. 법인격 부인의 법리³⁾

법인격부인론은 일정한 경우에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 또는 무시함으로써 법인인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자를 동일체로 보는 이론이다. 법인격부인을 통하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그 배후자에게 책임을 지우거

2) 법무부, 국제사법해설 (2001), pp. 38-39 참조.

3) 김동민, 법인격부인 이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격의 형해화 내지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홍익법학 제10권 제1호 (2009), pp. 225-252 참조

나 혹은 그 반대로 배후자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도 학설상 법인격부인론을 긍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법인격부인론의 실정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금지에서 구하거나, 또는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칙에서 구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현지법인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이므로 유한책임이 원칙인 기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필리핀 현지법인에 대한 법인격 남용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⁴⁾

나. 공동불법행위책임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현지법인과 함께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공동불법행위에는 3가지 경우가 있다. ① 좁은 의미의 공동불법행위로서, 각자가 제각기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이다(민법 760조 1항). 공동이란, 모의(謀議)나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 사이에 객관적인 연관이 있으면 된다. ②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누가 손해를 가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구타한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의 행위로 부상을 입었으나 그것이 누구의 행위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의 여러 사람은 각각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760조 2항). ③ 불법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로서, 교사자·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며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760조 3항).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과 본사와의 객관적인 연관을 입증하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사용자책임⁵⁾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본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지법인의 임원이면서 본사의 소속직원이 현지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그러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및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 배상책임을 지며 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라. 대리인 책임

현지법인이 본사를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본사에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본사가 현지법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현지법인에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때 본사 또는 현지법인은 대리인이 되고 대리제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판례는 자회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체결 또는 보증을 한 경우 모회사에게 실제로 법률효과가 귀속된다고 판시하였

4)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5) 김대규,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7집 (2009), pp. 579-608 참조

다.⁶⁾

4. 기업에 대한 형사적 대응

가.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 제2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속지주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죄를 범한”이라 함은 범죄의 행위나 결과 중 그 어느 것이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범죄행위 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에서의 한국 국민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원은 형법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속인주의에 의해 내국인의 국외 범이 처벌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형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과 범죄인인도협약(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 70여개 국가)과 국제형사사법공조협약(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인도 등 60여개 국가)이 체결되고 있고 국내법으로는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존재한다.

나. 형사특별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하여 형법 외에 형사특별법과 관련하여서도 내국인의 국외 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형사특별법은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해외한국기업의 현지에서의 인권침해나 환경파괴와 관련이 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환경범죄의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도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특별법상의 구체적인 처벌사유를 검토해보면 현실적으로 그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위 법률 제90조). 그런데, 위 법률 제81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은 위 법률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누구든지 조합을 설립할 자유가 있으나 위 법률은 설립신고를 요구하고 있고(위 법률 제10조), 노조의 신고증이 교부되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위 법률 제12조 제4항). 따라서 현지 법인 노조의 경우 위 법률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법률 제90조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 법인의 범죄능력 및 처벌

6)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매매대금.

법인은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법인에게 범죄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는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⁷⁾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형사특별법(행정형법)이 양벌규정을 둔 경우 법인도 형벌능력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III. 국제적 대응

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 이의제기

OECD는 1976년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를 비롯한 비윤리적 활동을 예방하고, 침해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1년 4차 개정시,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등의 비윤리적 활동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OECD회원국 및 비회원국으로서 이 가이드라인 승인국에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를 두게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당시 산업자원부 차관(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한국의 국내연락사무소로 지정하고, 사무국을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현,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로 지정하였다.

OECD 가이드라인은 제1부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개념 및 원칙, 일반정책, 정보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방지, 소비자 이익, 과학 및 기술, 경쟁, 조세), 제2부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이행 절차(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 절차지침, 이행절차에 관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인권에 관해 별도의 장을 두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프레임워크에 관한 소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국내법적 의무 등 인권에 관한 역할을 총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유엔인권이사회와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 (보호, 존중, 구제)를 통합하고,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사회권 규약,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ILO 선언에서 설정한 권리를 존중할 것을 포괄적으로 천명하였고 기업의 책임범주를 고용 및 노사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급망(supply chain)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관한 기업의 상당주의의무(due diligence)를 강조하고 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을 위한 핵심기준으로 기업계, 노동계, NGO를 포함한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의 이행 및 국내연락사무소와 연관된 시설의 이용과 가이드라인을 홍보하도록 하는 가시성(Visibility), 이해관계자들의 접근을 촉진하도록 하는 접근용이성(Accessibility), 연락사무소의 활동 결과의 대내외 공개를 뜻하는 투명성(Transparency), 일반대중이 연락사무소에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그 소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책임성(Accountability)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연락사무소로 지정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핵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실제로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판결, 배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I. 일반정책

기업들은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에서 확립된 정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다른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검토해야 한다. 이 점에서:

A. 기업은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발전에 기여할 것.
2. 자신들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자들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존중할 것.
3. 기업가(business interests)들을 포함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현지의 역량배양(local capacity building)과 아울러 건전한 상관행에 합치하는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의 다국적기업 활동의 개발을 촉진할 것.
4. 특히 고용기회의 창출과 노동자에 대한 훈련기회의 제공을 통해 현지 인적자원의 양성(human capital formation)에 힘쓸 것.
5. 인권, 환경, 보건, 안전, 노동, 조세, 금융 인센티브 또는 기타 현안과 관련된 법적 또는 규제적 기본 틀에서 의도하고 있지 않은 면제를 모색하거나 받는 것을 삼갈 것.
6. 모범 기업지배구조 원칙(good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을 지지하고 유지하며, 기업 그룹 전체에 모범 기업지배구조 관행(good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
7. 기업과 당해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 간에 신용 및 상호 신뢰관계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자율규제 관행(self-regulatory practices)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
8. 회사정책(company policies)을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적절한 전파를 통해 노동자(worker)들의 이러한 회사정책에 대한 인식 및 준수를 제고할 것.
9. 법률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기업 정책에 반하는 그러한 관행에 대해 경영진이나 적절한 경우 관련 당국에 신의성실하게 보고한 노동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적 또는 징계적 조치도 부과하지 않을 것.
10. 11, 12 항에서 설명하는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 예방,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위기 관리 시스템에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등 리스크를 대비한 상세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하며, 그 영향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설명을 할 것.
11.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야기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기업 경영 활동을 피하고, 그러한 영향력이 초래됐을 때는 그 사실을 알리고 설명할 것.
12. 부정적인 영향력을 초래하지 않았을 때라도 사업 관계에 의해 그 영향이 기업 경영, 생산, 서비스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때,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기업으로부터 당사가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 것.
13.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알리는 것 외에도, 실행 가능한 경우 공급업자 및 도급업자 등을 포함한 사업 협력체들이 가이드라인에 상응하는 기업행동 원칙을 적용하도록 장려할 것.
14. 현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기회를 제공할 것.
15. 현지의 정치활동에 대한 여하한 부적절한 관여를 삼갈 것.

B. 기업은 다음을 이행할 것이 권고된다:

1. 각자 처한 상황에 적합하게, 인터넷 상의 자유(Internet Freedom)를 고양시키는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같은 협력적인 노력을 존중할 것.
2. 실행 가능한 경우, 책임감 있는 공급망 관리(responsible supply chain management)에 대한 개인 및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발의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거나 이것들을 지원할 것. 이때, 발의의 내용은 개발도상국에 끼치게 될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과 기 존재하는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할 것.

IV. 인권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권리의 체계, 그리고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 및 그 국가가 따르고 있는 국제 인권 의무의 체계 안에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인권을 존중할 것. 즉, 다른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 것이며, 해당 다국적기업이 연관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보고하고 설명할 것.
2.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초래하지 말 것이며, 그런 일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영향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할 것.
3. (기업은 부정적 영향에 기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관계를 통하여 경영활동, 생산,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것.
4. 인권 존중에 대한 기업 내 정책을 약속할 것.
5. 기업의 규모, 성격, 경영 상황과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할 것.
6.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초래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그러한 절차를 통해 협력할 것.

V. 고용 및 노사관계

기업은 적용 가능한 법규(applicable law and regulations)와 노사관계(labour relations) 및 고용에 관한 일반적인 관행의 기본 틀 안에서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a) 노동조합(trade union) 또는 노동자 대표 기구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b) 단체 협상을 위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 기구를 가지며, 고용 조건(terms of employment)에 대한 합의를 위해 개별적 혹은 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하여 건설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c)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금지시키는 데에 기여하여야 하며, 최우선순위로서 최악의 아동노동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d) 모든 형태의 강제노역을 근절시키는 데에 기여하여야 하며, 그들의 경영 현장에 강제노역이 존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e) 노동자의 특성에 따른 선별(selectivity concerning employee characteristics)이, 특별히 보다는 고용기회 평등을 증진시키는 확립된 정부정책을 촉진하는 것이거나 직장의 본질적인 요건

(inherent requirements)과 관련된 것이 아닌 한, 인종, 피부색깔,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속민국(national extraction), 사회적 신분(social origin)과 그 밖의 사유에 의해 고용 또는 직무(occupation)에 있어서 노동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효과적인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s)의 진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고용조건에 대한 내실 있는 협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c) 노동자 및 그 대표들로 하여금 개별 사업장(entity)의 성과나 필요한 경우 당해 (다국적)기업 전체(the enterprise as a whole)의 성과에 대해 사실적이고 공정한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상호관심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 대표 간의 협력 및 협의를 촉진하여야 한다.

4. a) 진출국의 상응한 사용자(comparable employers)가 준수하는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 고용 및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b) 상응한 사용자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진출했을 경우,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 수준, 근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기업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동시에 최소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기본적인 욕구(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c) 직업상 건강과 작업 중의 안전(safety in their operations)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그 운용에 있어 가능한 최대로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노동자 대표 및 적절한 경우 관련 정부당국과 협력하여 숙련도(skill levels)를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6. 기업 운영상의 변화를 검토함에 있어, 특히 집단 정리해고(collective lay-offs or dismissals)를 수반하는 사업장의 폐쇄(the closure of an entity)를 검토하는 경우, 그러한 변화사항을 노동자 대표와 적절한 경우 관련 정부당국에 합리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동자 대표 및 적절한 정부 당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각 경우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되, 경영진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러한 통보를 할 수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결정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7. 고용조건에 대해 노동자 대표와 신의성실한(bona fide)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노동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협상에 부당하게 영향을 행사하거나 단결권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작업부서(an operating unit)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국가로부터 이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노동자들을 당해 (다국적)기업의 일정 사업장(the enterprises's componet entities)에서 다른 나라로 전근시키겠다고 위협해서는 아니된다.

8. 권한을 부여받은 노동자 대표는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이나 노사관계(labour-management relations) 문제에 대해 협상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들에게 상호관심사항에 결정권한을 가진 경영진 대표와 협의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VI. 환경

(다국적)기업은 자신들이 활동 중인 국가의 법규 및 행정관행(administrative practices)의 기본 틀 안에서, 그리고 관련 국제협약, 원칙, 목표 및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 공중의 보건 및 안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와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보다 넓은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를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국적)기업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다국적)기업에 적합한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a) (다국적)기업 활동의 환경,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adequate and timely) 정보의 수집 및 평가;

b) 측정 가능한 목적(objectives)의 수립과 적절한 경우 이러한 목적들 간의 지속적인 연관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포함하여 환경성과와 자원 활용의 개선을 위한 목표(targets)의 설정; 목표(targets)는 국가별, 혹은 세계적 차원의 환경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c) 환경, 위생 및 안전상의 목적 또는 목표의 진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와 확인.

2. 비용, 기업비밀(business confidentiality)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a) 환경성과의 개선에 대한 진전 상황 보고를 포함하여 당해 (다국적)기업 활동의 환경,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관한 적절하고 측정가능하며 입증 가능한 동시에 (적용 가능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일반 및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당해 (다국적)기업의 환경, 위생 및 안전에 관한 정책과 그러한 정책의 실시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적절하고도 시의성 있는 대화 및 협의(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를 가져야 한다.

3.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다국적)기업의 제조공정(process), 제품 및 서비스의 전 라이프사이클(full life cycle)에 걸쳐 결부된 예견할 수 있는 환경, 위생 및 안전과 관계된 영향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피할 수 없을 경우 최소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평가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된 활동이 환경, 위생 또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또한 그러한 활동이 권한 있는 당국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를 준비하여야 한다.

4.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에 대한 과학적 및 기술적 이해에 기초하여 인간의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하되,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비용효과적인 조치(cost-effective measures)의 실시를 지연시키기 위한 이유로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를 원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사고 및 긴급사태를 포함하여 (다국적)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 및 건강상 피해를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s)을 유지해야 하고, 관할 당국(competent authorities)에의 즉각적인 보고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6. 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수준에서, 적절한 경우, 공급체인(supply chain)의 수준에서) 기업의 환경성과(corporate environmental performances)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a) 당해 (다국적)기업 내 최상의 환경성과를 이룩한 부서의(in the best performing part) 환경성과에 관한 기준을 반영한 기술 및 작업절차를 당해 기업 모든 부서에 채택하도록 할 것.

b)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의도된 사용에 있어 안전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및 천연자원의 소비에 있어 효율적이고,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할 것;

c) 당해 (다국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이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인식의 고취를 도모할 것; 예를 들면, 온실가스배출량, 생물다양성, 자원효율성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

- d) 배출량 감소, 효율적인 자원 사용과 재활용, 독성 물질 사용자제 및 대체재 개발에 관한 전략, 혹은 생물 다양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당해 (다국적)기업의 환경성과를 향상시킬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와 평가를 시행할 것.
7. 위험물질의 취급 및 환경사고의 예방을 포함한 건강 및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영향 평가 절차, 홍보(public relations) 및 환경기술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환경경영분야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8. 가령 환경에 대한 인식과 보호를 제고하게 될 연대나 발의(partnership or initiatives)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적으로 의미 있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공공정책의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2011. 10. 6. 결정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연락사무소(NCP) 구성·운영 상황 개선권고]

주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연락사무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그 실효적인 구제를 위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
가. 국내연락사무소에 기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것
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질의·이의제기 절차, 연례보고서, 업무담당자 등 관련 자료를 이용자가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할 것
다. 이의제기 접수 및 결과통지 시 업무 처리기한을 명시 하는 등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
2. 국내연락사무소에 이의제기가 접수된 사안들을 사무처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그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

[까비페 섬유공장 노조탄압 사례 관련 2007. 9. 3. NCP 이의신청]

진정인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Workers Assistance Center, Phils. Jeon Union

1. 필스전이 필리핀 노동부가 필스전 노조의 자격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가이드라인 제 4장 고용 및 노사관계 1항 “노동조합 또는 다른 신의 성실한 근로자 대표에 의해 대표되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고용조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들 대표와 개별적으로 또는 사용자단체를 통해 건설적인 협상에 임하여야한다”라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2. 가이드라인 제 4장 고용 및 노사관계 7항의 “고용조건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신의성실한 협상을

진행중이거나 근로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협상에 부당하게 영향을 행사하거나 단결권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작업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국가로부터 이전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에 의거하여 필스전은 노조설립시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위협을 함으로써 필스전 노동자들의 단결권행사를 제약하였다고 판단됩니다.

3. 필스전은 가이드라인 제 1장 개념 및 원칙 7항에 규정된 “여러나라에 소재해있는 다국적기업의 실체들은 그 소재지국의 관련법령을 준수해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필스전이 수차례 필리핀 노동부와 법원이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협상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노조가 필리핀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파업과 시위를 벌였음에도 단체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과 노조를 공격한 것은 필리핀의 법령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가이드라인 제 6장 뇌물방지에 명시된 “ 기업은 영업 또는 기타 부당한 이득을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뇌물이나 다른 부당한 이득을 제의하거나, 공여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노조가 회사 측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합니다.

5. 피한들이 삼엄한 경계와 엄격한 출입제한이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농성장을 아무런 제지없이 들어와서 여성노동자들을 납치하고 길에 유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회사의 개입과 묵인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제 2장 일반정책 2항에 “자신들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자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이라는 조항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목표하고자 하는 기업의 모범적인 관행을 만드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에 관한 각종 국제기준들이 강조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지 못한 최악의 사례일 것입니다.

필스전이 2007년 8월 6일에 발생한 폭력사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특히 이 문제는, 최근 필리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살해(Political Killing)과 맞물려 국제 노동 및 인권단체가 주목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국내연락사무소의 각별한 관심과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슈에 가스 프로젝트 관련 2008. 10. 29. NCP 이의신청]

진정인 : EarthRights International(ERI, 태국과 미국 소재), 슈에가스운동(The Shwe Gas Movement), 국제민주연대, 버마를 사랑하는 작가모임, 버마민주화를 지원하는 모임, 버마행동, 새사회연대, 외국인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 대우인터내셔널 (Daewoo International)과 한국가스공사 (KOGAS)가 버마에서 행하고 있는 위반사항들의 요약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슈에 가스 프로젝트에 개입함으로써, 본 이의제기서의 제Ⅳ 항에서 자세히 기술할 바와 같이 경제협력기구의 다국적 기업을 위한 지침서

(OECDGuidelinesforMultinationalEnterprises) 중 다음의 사항에 관해 현재 위반 중 이거나/ 이면
서 앞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 지속가능한 개발에 공헌하지 아니하고, 슈에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
지 아니함으로써, OECD 지침서 제 II장, 1조와 2조 (OECDGuidelineCh.II,§1and2)를 위반.
- 자신들의 활동과 재정적 성과에 관련한 정보를 일반인 및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공개하지 아니하
고, 자신들의 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consult) 아니함으로써,
OECD 지침서 제 III장 1조 및 제 V장 2조 (OECDGuidelineCh.III,§1andChpV,§2)를 위반.
- 강제 노동을 없애는데에 공헌하지 아니함으로써, OECD 지침서 제 IV장 1조
(c)(OECDGuidelineCh.IV,§1(c))를 위반.
- 이미 철저한 해저 탐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IA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OECD 지침서
제 V장 3조(OECDGuidelineCh.V,§3)를 위반.

○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에 구체적인 요청

이의제기 제출인들은 한국 측 국내연락사무소 (NCP)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요청한다:

- 여기서 제기한 위반들의 해결책에 관련하여 이의제기 제출인들과 해당 기업 사이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
- 대우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인권과 환경의 보호를 위해 제안된 예방적 조치의 현실화에 있어
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동의를 확보하도록 촉구할 것.
- 본 이의제기서를 접수하시면, 책임 있게 이에 대한 응답을 서면으로, 명확히, 지체 없이 할 것.
- 이 이의제기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내연락사무소 측 진행 상황을 이의제기 제출인들에게 알릴
것.
- 이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한국 국내연락사무소 측에서 SGM에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는 문건
은 영문으로 번역할 것.
- 이 이의제기를 한국 국내연락사무소가 취급한 후 도출된 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문을 작성하셔서, 영
문으로 번역한 후, 일반에게 공개할 것.

[오디사 제철소 프로젝트 사례 관련 2012. 10. 18. NCP 이의신청]

진정인 : Lok Shakti Abhiyan (인도), Korean Trans National Corporations Watch (한국),
Fair Green and Global Alliance (네덜란드), Forum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노
르웨이)

피진정인 : POSCO (South Korea), ABP/ APG (Netherlands), The Government Pension
Fund - Global (Norway)

진정서 제출처 : 한국 NCP, 네덜란드 NCP, 노르웨이 NCP

포스코는 프로젝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인권, 사회 및 환경영향에 대해 광범위하고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의미 있는 협의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포괄적인 인권 및 환경 상당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포스코는 상당주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개발 시행으로 인해 수 천명의 주민들과 환경에 미칠 중요한 부정적 영향들을 감소시키거나 방지할 능력이 없는 회사임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POSCO는 다음의 사항들을 불이행하여 OECD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

- 1) 경영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인권침해 예방 및 경감조치와 인권보호를 위해 사업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조치를 취하기
- 2) 지역공동체의 피해방지 및 지역공동체와의 협의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인권 상당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 3) 포괄적인 환경 상당주의 의무 수행 및 실제로 프로젝트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역공동체와 협의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네덜란드 연금회사인 ABP와 APG 및 노르웨이의 정부연금사인 GPFG는 포스코와의 재정상의 관계를 통한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적절하게 완화시키거나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 국내연락사무소에게 진정인이 요청하는 사항

우리는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국내연락사무소가 가이드라인의 일반정책, 정보공개, 인권 및 환경과 관련하여 포스코가 위반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이 특정 사안에 대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 세 연락사무소가 가능한 한 최대 범위에서 협력하고 균등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 특정한 사안의 일관성있는 처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기관투자자들인 네덜란드의 ABP/APG와 노르웨이의 GPF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책실행에 따라 포스코가 이 진정서에서 언급된 위반사항들을 제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ABP/APG와 GPFG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고 자체 ESG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악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취할 조치들을 더욱 공고히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만일 사업체가 악영향을 일으키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게 되면, 그러한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최대한으로 남아 있는 영향들을 경감시키도록 사업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나아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사업과 관련된 적절한 대응책은 위험경감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공급자와의 관계(또는 사업관계)의 지속성을 포함한다. 위험경감이 이루어지는 동안 사업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마지막 해결책으로

서 위험경감 시도가 실패한 뒤, 또는 사업체가 위험경감을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나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 때문에 공급자와의 관계파기 등.

무엇보다도 먼저, **ABP/APG**와 **GPFG**는 관련 지역공동체와 공동체 대표단들과의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ABP/APG**와 **GPFG**가 진정인들과의 협의속에서 다음사항들을 포함하는 투명한 위험경감전략을 세워나가 것을 요청한다.

- 1) 사업적 역량을 발휘하는 조치
- 2) 필요한 경우 사업적 역량을 증강하는 조치
- 3) 투자의 지속에 대한 최소기준 공개조치

이에 더해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규모와 포스코와 지역공동체간의 수 년간 분쟁을 볼 때, 우리는 국내연락사무소들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검토하는 독립적인 사실규명조사를 직접수행 또는 위탁수행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국내연락사무소들은 또한 지역민들이 포스코프로젝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조정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취소, 이전, 대대적인 소규모화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들을 요청한다.

만일 조정이 실패하면, 국내연락사무소들이 최종보고에서 포스코가 침해할 것으로 보는 의혹들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는지 등 사실과 상황을 공동으로 평가할 것을 요청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포스코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포괄적인 인권 및 환경상당주의 의무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삼림권보호법에 따라 지정부족과 기타 전통삼림지역거주민 모두로부터 자유의사에 따라, 우선적이며, 정보를 바탕으로 한 동의를 구하기.
- 2) 오디사 주 정부가 삼림권보호법에 따라 그람사바하(**Gram Sabha**, 마을자치의회)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동의를 얻어낼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법적 권리에 양립함을 설명하기.
- 3) 삼림권보호법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문서 및 문서외적인 방식 모두의 형태로 주정부가 강제퇴거와 삼림파괴 금지를 공개요청하여 그 의도의 성실성을 보여주기.
- 4) 유엔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호, 존중, 구제"의 틀에 맞는 방식으로 포괄적인 인권상당주의 의무를 실행하기. 인권평가는 발생가능한 인권침해의 모든 범위와 중대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피해지역 공동체과 의미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기.
- 5) "새로운" 포괄적인 영향평가는 환경삼림부의 미나굽다위원회의 다수보고서의 결과물과 2007년 4월 15일 공개심의회에서 지역민들이 제기한 우려 및 문제들, 그리고 국가환경재판소의 2012년 3월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여 완수하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호법 (1986)의 요구사항에 따라 1년 내내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기.
- 6) 잠재적인 인권, 사회, 그리고 환경침해의 모든 범위와 중대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피해지역 공동체들과 함께하는 이해집단의 의미있는 협의과정에 참여하기.
- 7) 인도정부가 허가한 제철소 및 항구를 위한 허가 조건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조건들의 실행 상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기.
- 8) 포스코가 유엔의 "보호, 존중, 구제" 틀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인권모범사례에 부합하면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책실행을 채택하고 공개하기.
- 9) 포스코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이나 억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비판적임을 보여주는 공개

성명서를 발표하기.

2. 유엔인권메커니즘 대응

가. 한국의 국제인권법적 의무의 범위

유엔핵심인권협약	가입·비준일	선언/유보	조약기구의 특정권한의 인정
인종차별철폐협약	1978. 12. 5.	없음	개인 진정(제14조)
사회권규약	1990. 4. 10.	없음	
자유권규약	1990. 4. 10.	제22조 ⁸⁾	국가 간 진정(제41조)
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	1990. 4. 10.	없음	개인 진정(제1조)
여성차별철폐협약	1984. 12. 27.	제16조 제1항 (g) ⁹⁾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2006. 10. 18.	없음	국가 간 진정(제1조) 개인 진정(제2조) 조사절차(제8조, 제9조)
고문방지협약	1995. 1. 9.	없음	국가 간 진정(제21조) 개인 진정(제22조) 조사절차(제20조)
아동권리협약	1991. 11. 20.	제21조 (a), ¹⁰⁾ 제40조 제2항 (b)(v) ¹¹⁾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선택의정서	2004. 9. 24.	없음	
아동권리협약 아동매매 등 선택의정서	2004. 9. 24.	제3조 (1)(a)(ii) ¹²⁾	
장애인권리협약	2008. 12. 11.	제25조 (e) ¹³⁾	
대한민국이 당사국이 아닌 유엔핵심인권협약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및 강제실종자보호협약	

기타 주요 관련 국제기준	가입·비준 여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O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O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의 예방, 금지 및 처벌을 위한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추가의정서	X
난민 및 무국적자 관련 조약 ¹⁴⁾	O(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제외)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및 그 추가의정서 ¹⁵⁾	O(제3의정서 제외)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¹⁶⁾	O(국제노동기구협약 제29호, 제87호, 제98호, 및 제105호 제외)
유네스코(UNESCO)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X

나. 유엔인권권고의 의의

첫째, 유엔인권권고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제인권법에 근거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¹⁷⁾ 따라서 유엔헌장, 한

8) 자유권규약 제22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위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9)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g)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10) 아동권리협약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당사국은

- (a)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1) 아동권리협약 제40조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v)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 12) 아동권리협약 아동매매 등 선택의정서 제3조 1.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의 행위와 활동은 그 행위지의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그리고 개인적 차원이나 조직적 차원의 실행인가를 불문하고 형법상 완전히 처벌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a) 제2조에 정의된 아동매매와 관련하여,

(ii) 입양에 관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률문서를 위반하며 중개자로서 아동입양을 위한 동의를 부당하게 유도함.

13)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 (e)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 14)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무국적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 15)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협약),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병자, 부상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2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 (제4협약),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2의정서), 및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추가적인 표장의 채택에 관한 의정서 (제3의정서).

- 16) 강제노동협약 (국제노동기구협약 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국제노동기구협약 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국제노동기구협약 제98호),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00호), 강제노동폐지협약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05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11호),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8호),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 및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

- 17) 헌법 제6조 제1항.

국이 가입한 유엔인권조약 기타 인권 관련 조약 등과 관련 국제관습법은 국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인권법은 인권과 관련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¹⁸⁾ 예컨대 기존 법률 혹은 새로운 법률은 국제인권법과 배치되지 않도록 심사되고,¹⁹⁾ 국제인권법은 구체적인 재판규범으로 적용된다. 행정의 경우 국제인권법은 모든 행정작용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행정주체 혹은 공무원이 이를 어겼을 경우 국가배상,²⁰⁾ 직무유기,²¹⁾ 성실의무 위반²²⁾ 등 민형사상 책임과 법적 징계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 유엔인권권고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제인권법에 근거한다. 유엔인권이사회 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와 특별절차의 경우,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유엔헌장 명문의 규정²³⁾과 법적 기구인 유엔총회의 결의 등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인권조약과 관련된 권고의 경우, 권고의 주체인 조약기구의 구성과 임무가 조약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고가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하여도 명문의 규정²⁴⁾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고서가 제출되고 유엔인권권고가 이루어지는 절차는 법률에 근거한 법적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는 그 권고가 실제적·절차적 측면에서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인권법의 명문의 규정에 근거한다는 점에 비추어, 곧바로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내법과 명백히 배치되지 않는 한 충분히 존중되고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적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²⁵⁾

셋째, 유엔인권권고는 실제법·절차법적으로 법률에 기초한 권고라는 점 외에도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²⁶⁾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의 국제 협력 정신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취지에서 유엔인권권고에 대하여 설사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²⁷⁾ 또한 권고의 수용, 권고의 이행 혹은 이행 노력의 약속은 국제법적으로는 조약에 의한 의무부담의 의사표시일 수 있다.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²⁸⁾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²⁹⁾ 한편 이러한 약속은 국내법적으로는

18) 황필규,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 인권현실: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NGO보고서와 정부보고서 초안의 비교·평가를 중심으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 『2008년 제1차 인권세미나: 국제인권현안과 국제인권법』 (2008. 3. 22.), pp. 1-2.

19) 대한민국은 유엔인권기구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유보조항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제인권법이 기존 국내법과 배치되지 않으며 새로운 입법 시에도 반드시 기존 인권조약 등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왔다.

20) 국가배상법 제2조.

21) 형법 제122조.

2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23) 유엔헌장 제1조 제3항, 제13조 제1항 (b), 제55조 (c), 제56조, 제62조 제2항, 제68조, 제76조 (c) 등.

2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6조, 제17조 등.

25) 황필규, “외국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인권과 정의』 제365호 (대한변호사협회, 2007. 1.), p. 49.

26) 헌법 전문.

27)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참조. “국제연합(UN)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헌법 제6조 제1항, 위 87호 조약 제15조 제1항, 98호 조약 제8조 제1항 참조), 다년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28)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

2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법적 기관의 권고에 대한 의무부담의 의사표시로서 행정작용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비록 유엔인권권고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상 의사표시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가능성 등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유엔인권권고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에 반영되는 경우 이는 행정계획의 일부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지게 된다.

[200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미국에 대한 최종견해]

30. 위원회는 미국에 등록된 다국적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천연자원 개발 관련 경제활동이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선주민들의 토지, 건강, 생활환경, 삶의 방식에 대한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고서를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위원회는 미국정부가 미국 밖 지역의 선주민들의 권리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에 등록된 다국적기업의 행위를 방지하지 위한 적절한 입법적 혹은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미국이 미국에 등록된 다국적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최종견해]

아동 권리와 기업 부문

26. 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 꼽히는 당사국의 기업 부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있음을 환영한다. 그 관심은 지금으로서는 환경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 기준과 최저임금을 다루는 당사국의 법률의 성격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자국영토에서나 외국에서나 기업 활동의 반인권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할 포괄적인 법률 구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하며 주목한다.

- a) 당사국은 강제 아동 노동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며 따라서 아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연루된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그리고 유럽의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 b) 당사국에서 발주된 사업들은 여러 국가들에서 특히 물에 대한 권리와 주거권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토지 임대 계약을 맺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c) 당사국이 체결했거나 보류 중인 자유무역협정(FTAs)에 대한 협상에 대하여 어떠한 인권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 “보호, 존중 그리고 구제”라는 기본 보고서를 채택한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8/7과 그 문제에 관한 워킹 그룹의 신설을 요청한 2011년 6월 16일의 결의안 14/7, 두 결의안 모두 기업과 인권의 관계를 탐색할 때 아동의 권리가 포함되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공급망 또는 협력 업체에 의해서건 간에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활동에서 반인권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에 근거지를 둔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법률 구조를 제 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기업 책임성 모델의 채택을 증진할 것. 보고에 아동권 지표와 변수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증진돼야 하며 아동권에 대한 기업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요구될 것.
- b) 강제 아동 노동으로 생산된 산물의 수입을 방지하고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생산물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도록 요구하는 무역 협정 및 국내법을 이용하도록 생산물 반입을 모니터할 것.

- c) 자국 기업들이 외국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며 프로젝트가 원주민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인권/아동권리 평가에 영향을 끼칠 때에는 사전에 인지된 동의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와 협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 d) 자유무역협정(FTAs)을 협상하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아동 권리를 포함한 인권 영향 평가가 수행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할 것.

[2012년 유엔인권위원회(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의 독일에 대한 최종견해]

16. 관련 인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어지는 독일기업들의 해외에서 활동에 대하여 당사국이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하면서, 위원회는 그러한 조치들은 모든 경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

당사국은 그 영토나 관할 하의 모든 기업들이 그들의 활동 전반에 걸쳐 규약에 따른 인권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대를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그런 기업 활동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과 유엔 인권과 다국적 기업 및 기타 비즈니스 기업 사안에 관한 워킹그룹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I.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A. 기본 지침

1. 국가는 영토 및/또는 관할권 내에서 기업을 포함한 제삼자와 관련된 인권침해를 방지해야한다. 효과적인정책, 법률, 규제, 판결을 통하여 예방, 조사, 처벌, 시정을 위한 적절한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다.
2. 국가는 해당 영토 및/또는 관할권에 소재한 모든 기업들이 사업운영에 있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기대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B. 운영 지침

일반적 국가 규범과 정책 기능

3.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 (a) 기업에게 인권 존중을 요구하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목표를 두는 법을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그러한 법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그 결함을 개선한다.
- (b) 회사법과 같이 기업의 설립과 현행활동을 통제하는 법과 정책이 기업의 인권 존중을 무리하게 강요하지는 않되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한다.
- (c) 기업에게 사업 활동에 있어서의 인권 존중 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 (d) 기업이 인권에 대한 영향력 하에서 할 수 있는 인권 존중 노력에 대하여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계끔 장려하고 필요시 요청한다.

국가와 기업의 관계

4. 국가는 국가가 소유·통제하는 기업이나, 수출신용기구, 공적투자보험 및 보증기구와 같이 국가기관

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받는 기관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 절차 실행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국가는 국제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인권을 향유하는데 있어서 기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을 맺거나 법률을 제정할 때 적절한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

6. 국가는 그들과 상거래를 맺는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증진하여야 한다.

분쟁지역에서의 기업의 인권 존중 지원

7.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도는 분쟁지역에서 더 높아지므로, 국가는 이러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 인권 침해에 관련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a) 기업과 가능한 빠른 초기 단계에서부터 협력하여 기업 활동과 사업관계에서 존재하는 인권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고 경감시키는 것을 돕는다.

(b) 성폭력과 성별 차이에 기반을 둔 폭력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기업이 고조되는 인권 침해 위험을 평가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

(c)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되었거나 문제해결에 협력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허용되던 공적 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

(d) 현 정책과 법률, 규제, 집행조치가 심각한 인권 침해에 기업이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지 확인한다.

정책의 일관성 확보

8. 국가는 기업의 활동을 형성하는 각 정부 부처와 기구 및 기타 정부 기반 기관으로 하여금 정부의 인권 보호 의무를 인식하고 각 의무에 대한 역할을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정보와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9. 국가는 타국 또는 기업과 함께 기업 관련 정책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특히 투자조약 또는 계약 체결의 경우,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내정책에 적절한 수준의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10. 국가가 기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다루는 다국적 기구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다음의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

(a) 다국적 기구는 회원국의 인권 보호 의무 수행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며 기업의 인권 존중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b) 다국적 기구는 각각의 역할과 역량 내에서 기술적 지원과 능력개발, 이해도 증진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필요하다면, 기업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고 국가의 기업과 관련된 인권 보호 의무수행을 돕도록 지원해야 한다.

(c) 이행지침에 대한 공동된 이해를 촉진하고 기업과 인권에 대한 도전과제를 다룸에 있어 국제 협력을 증진한다.

II.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A. 기본 지침

11.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하고 기업이 연루되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12.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참고 한다 - 최소한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과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노동에 있어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선언'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원칙을 포함한다.

13.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다음과 같은 책임도 포함한다.

(a)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 그 문제를 다룬다.

(b) 만약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에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사업관계에서 운영, 생산,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막고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규모, 업종, 운영환경, 소유, 구조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인권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의 규모와 복잡성은 그러한 요소와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15.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은 자신의 규모와 환경에 맞는 아래와 같은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a) 인권 존중 책임을 충족시키는 정책적 의지

(b)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 방지, 완화하고, 인권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 절차

(c) 기업이 야기하였거나 기여한 인권에 미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라도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

B. 운영 지침

정책적 서약

16.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천하는 토대로, 기업이 서약하는 정책성명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녀야 한다.

(a) 기업의 최고위 수준에서 승인된다.

(b) 기업 내부와 외부 전문가와의 적절한 자문에 의해 구성된다.

(c) 기업의 운영, 생산,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다른 관계자에게 기업의 인권 존중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명시한다.

(d) 공개적이어야 하며 모든 직원과 비즈니스 파트너, 관련 이해관계자와 기업 내부 및 외부에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한다.

(e) 기업 전체에 적용하기 위해 적절한 운영정책과 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

17.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방지·완화하고 기업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 기업은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를 실행해야 한다. 이 절차는 인권에 대한 실제적·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통합하며, 발견한 사실에 따라 행동하고, 그 반응에 대해 기록하고 어떻게 영향을 다루었는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a) 기업의 운영, 생산,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즈니스 관계 혹은 기업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였거나 기여한 것을 다뤄야 한다.

(b) 기업의 규모와 인권에 미치는 위험도의 수준, 사업운영성격과 환경에 따라 그 범위와 복잡성이 다양하다.

(c) 기업의 활동과 사업운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인권에 미치는 위험도 점차 바뀐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18.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은 사업 관계의 결과로 또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그리고/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 절차는 다음의 특성을 따라야 한다.

(a) 내부 및/또는 외부의 독립된 인권 전문가를 이용한다.

(b) 기업의 규모와 운영특성 및 환경에 적합한 수준에서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과 기

타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의 실질적 자문을 포함한다.

19.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해 기업은 영향평가로부터 발견한 사실을 관련 내부 역할과 절차 전체에 걸쳐 통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효과적인 통합은 다음을 필요로 한다.

(i) 영향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책임을 기업의 적절한 직급과 역할 담당자에게 준다.

(ii) 내부적 의사결정, 예산할당, 감시절차를 이러한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b) 적절한 조치는 다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i) 기업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 또는 기여 하였는가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 사업관계에서 운영, 생산,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단독적으로 연루되어 있는가의 여부

(ii)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는데 있어 기업의 영향력의 정도

20. 인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업은 대응의 효과성을 돌아봐야 한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추적한다.

(a) 적절한 정성적, 정량적 지표를 활용한다.

(b)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내부와 외부 모두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21. 기업의 인권영향 대응에 대해 책임감 있는 설명을 하려면, 기업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그에 관해 우려를 제기하였을 때 기업의 자체적 대응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상당한 인권침해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그들의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활동 보고는 다음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a) 기업의 인권 영향 내용을 반영하는 일정한 형식과 빈도를 가지고 관심 있는 청중들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한다.

(b) 특정한 인권 영향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대응의 적절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c) 정보공개가 인권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 직원, 상업적 기밀유지를 위한 적법한 요구에 대해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

개선

22.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였다고 파악한 경우, 기업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 개선을 제공하거나 협력해야 한다.

사업 환경에 대한 문제

23. 기업은 모든 경우에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 기업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법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준수하여야 한다.

(b) 상반되는 규제에 직면하였을 때,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규범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c)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일으키거나 기여할 수 있는 리스크는 기업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법률 상 준수 문제로 다룬다.

24. 실제적, 잠재적으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활동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업은 가장 심각하거나, 대응이 지체되었을 때 구제가 불가능 할 수도 있는 영향을 제일 먼저 찾고 완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III.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

A. 기본 지침

25. 기업과 관련된 인권 침해를 막는 국가 의무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는 자국 영토 및/또는 관할권

내에서 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사법상, 행정상, 입법상,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구제책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운영 지침

정부 기반의 사법적 고충처리제도

26. 국가는 기업에 대한 인권 관련 소송을 다룸에 있어 국내 사법 제도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에는 구제책으로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실질적, 기타 관련 장벽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포함된다.

정부 기반의 비 사법적 고충처리제도

27. 국가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사법적 제도와 더불어 기업과 관련된 인권 침해로부터의 구제를 위한 포괄적 국가 기반의 제도의 한 부분으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비 정부 기반의 고충처리제도

28. 국가는 기업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다룸에 있어 비 정부 기반 고충처리제도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29. 제기된 문제가 빠르게 논의되고 곧바로 구제될 수 있도록 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설립하거나 참여해야 한다.

30. 인권관련기준의 존중에 기반을 둔 산업과 다분야 이해관계자, 기타 협력적 이니셔티브는 효과적인 고충처리제도가 마련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31. 정부 기반과 비 정부 기반의 비 사법적 고충처리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비 사법적 고충처리제도는 다음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a) 정당성 :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고충처리절차를 공평히 진행하는 것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자 집단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b) 접근성 : 특정한 장벽에 부딪힌 피해집단에 알맞은 도움이 제공되어야 하고 절차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c) 예측성 : 각 단계가 진행되는 기간, 명확한 진행절차유형, 가능한 성과, 그리고 결과이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 등과 같이 해당절차와 정보를 명확하게 알리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d) 형평성 : 피해집단이 정당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존중받는 조건에서 고충처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와 조언, 전문지식으로서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e) 투명성 : 문제가 되는 공공이익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하여, 고충제도의 당사자들에게 진행경과에 대해 알리고 제도의 성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f) 권리의 적합성 : 결과와 구제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g) 지속적인 학습의 자료 : 차후 고충이나 침해를 방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교훈을 파악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운영 기반의 고충처리제도는 다음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h) 대화와 참여에 기반 : 고충을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의 설계와 성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반올림 소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SHARPs)



Supporters for Health And Right of People in Semiconductor Industry

1. 활동의 시작

2007년 11월 20일 삼성반도체 기흥 사업장 앞에서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과 노동 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발족 당시 공식적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피해자는 삼성반도체 기흥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씨의 유족 뿐이었습니다. 황유미 씨의 유족들이 같은 공장에서 일한 다른 백혈병 피해 노동자 여섯 명의 존재를 알아내긴 하였으나,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러지기 시작하면서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던 동료 노동자들과의 접촉이 모두 끊어져 상세한 작업력이나 정확한 이름조차 확인하기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단 한 명의 산재 인정 투쟁을 계기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사례는 아마도 그리 흔치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노동조합조차 없는 사업장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황유미 씨의 사망에 대한 유족보상 청구를 접수한 지 다섯 달 뒤, 지역의 노동조합과 노동보건운동단체, 인권단체 등 이십 여 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황유미 씨 한 명의 직업병 인정 투쟁이나 백혈병이라는 소재에 국한된 투쟁이 아니라, 삼성반도체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지향하는 교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특히 피해 당사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우리 유미는 백혈병으로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결코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확히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황유미 씨의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IBM 공장, 영국의 내셔널 반도체 공장, 타이완의 RCA 공장 등에서 암으로 죽어간 젊은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이야기와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도체·전자산업은 그 탄생 직후부터 직업병 피해 뿐 아니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조합 탄압, 환경오염 등 수많은 문제들을 세계 곳곳에서 일으켜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과 경험을 배경으로 공동대책위원회는 산재 은폐에 맞선 삼성반도체 백혈병 진상 규명 투쟁 뿐 아니라 삼성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투쟁 조직과 연대, 그리고 직업병과 환경오염이라는 반도체 산업 세계화에 대한 폭로와 저항을 활동 목표이자 방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부터는 백혈병 뿐 아니라 다른 직업병 피해들을 아우르고 삼성 뿐 아니라 다른 반도체·전자산업체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이하 반올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 반올림 활동 목표

가. 산업재해 진상규명과 보상 쟁취

고등학교 3학년때부터 입사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부질환과 생리불순 등을 겪고 유산과 불임도 일상다반사라는 얘기는 반올림이 지금껏 활동을 하며 접한 ‘일반적인’ 제보였습니다. 특이하지도 않는 일상적인 일이었고 그 괴물 같은 곳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알 순 없었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백혈병, 림프종 등 혈액암, 뇌종양, 흑색종, 육아종,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등 심각한 질환만이 사회화되는 것을 넘어서, 피부질환과 생리불순, 유산, 근골격계질환, 불임, 탈모 등등 그 모든 건강피해들이 집단적인 노동조건과 환경에서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직업병’임을 알리고 산업재해로 보상받고, 일터의 유해요인을 찾아내고 제거해서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외침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직업병 피해노동자가 1명인지 ‘50명을 넘었는지’가 아니라, 단 한 명이어도 그 병이 ‘삼성반도체에서 일하지 않았어도 발병했을까?’라고 의문을 던져야합니다. 그래서 그 병이,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어도 발병했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을 때 비로소 ‘직업병이라는 의심’을 한 겹 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개인질환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직업병으로 인정받아 신속하게 치료하고 보상받아야 합니다. ‘업무관련성의 증거’ 유사한 일터에서 유사한 작업조건과 환경에 노출되어, 집단적으로 사망하고 투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직업성 피해 제보는 삼성전자(반도체, lcd 등)와 삼성전기에서 150여명을 달하며 그 중에 50여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고 병들어야, ‘직업병’으로 인정받을지 우리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소름끼치는 현실입니다.

나. 무노조경영으로 신음하는 삼성노동자들의 노동3권, 건강권 등 ‘노동기본권’쟁취

누군가 말합니다. “금호타이어에는 자살한 질병은 있어도 죽거나 중증의 질환에 걸리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한국타이어에는 자살한 질병은 없지만, 죽거나 쓰러지는 일이 벌어진다” 고 말합니다. 한국타이어에는 ‘자살한 질병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폐되는 것이고 은폐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만 드러나는 것이죠. 삼성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집단적인 노동조건과 환경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어떠한 창구도 기구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삼성반도체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은 오전 오후 4시간을 일하는 동안 화장실을 못갑니다. 공장의 출입구는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에어 샤워’를 하고 ‘방진복’ 갈아입는 유일한 통로를 거쳐야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공장 밖’에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면, 작업복을 갈아입고 에어샤워를 하는 행위를 2번 해야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4시간 동안 화장실을 참기위해 ‘물을 먹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도 없는, 인간이 아닌 생산 기계로 생각하는 삼성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생각 할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그 노동조건과 환경은 바뀌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을 병들거나 다치거나 죽는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반올림은 ‘무노조 신화’가 곧 ‘노동자 살인 기업’과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알리는 활동과 함께, 삼성에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투쟁이 함께하며 노동기본권이 쟁취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점 폭로

반올림의 투쟁은 지난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계기가 됐던 ‘원진레이온 투쟁’과 ‘문송면 군 수은중독 투쟁’을 닮았습니다. 1966년에 조업을 시작해서, 2010년 현재 1,000여명의 이황화중독 노동자를 있게 한 원진레이온. 이 설비는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집단적인 신경독성을 일으켜 일본으로 이전한 설비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일본에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리고 이 설비는 1993년에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황화탄소 중독 제조기’가 수 천명의 노동자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해도 여전히 살아남아서 이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5세의 나이에, 학업을 잇고 가정생활에도 도움이 되고자 협성계공에 입사하여 2달 만에 수은중독으로 1988년에 세상을 떠난 문송면 군. 삼성에서 일하는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대부분은 학업을 포기하고 가정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 고3때부터 취업을 나간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입사한지 채 몇 년이 되지 않아, 피부질환과 생리불순, 근골격계질환을 겪고 유산과 불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백혈병 등 혈액암, 뇌종양, 희귀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암에 걸려 투병하거나 죽습니다. 자본의 이윤창출과 신자유주의 구조 하에서,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은 다각도로 파괴되고 있고 그 역사는 되풀이되다 못해, 더 치밀하고 강도 높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올림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어느 개인과 특정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특수하게 보일 뿐입니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규정한 ‘교대근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방진복과 마스크도, 4조3교대이지만 잔업을 포함해서 12시간 맞교대하는 것도, 공장 밖에 화장실이 있어서 4시간 동안 생리적 욕구를 짓밟히는 것도, 생활비가 없어서 ‘원인 제공자’인 삼성의 돈으로 치료비와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가족의 억울한 투병생활과 죽음을 세상에 알리려 해도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 모두. 특정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이 시대의 공통된 얘기이자, 우리가 투쟁해야할 대상인 것입니다. 반올림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신자유주의’가 만든 세상의 한 단면이며, 그 피해자들이 투쟁의 목소리를 외치는 지금. 절실한 연대와 공동투쟁이 필요합니다.

라. 아시아, 전자산업 노동자, 국제 연대

IT산업이 먼저 성행했던 미국이나 영국에서 1980년대에 발병한 환경오염과 에너지 고갈, 그리고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이 발생한 이후, 아시아로 넘어온 설비들이 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지금, 반올림의 활동은 국내의 전자산업과 함께, 아시아에서, 전자산업에서 고통 받고 있는 직업병 피해자와 환경오염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하고자 합니다. 자본의 이윤창출과 신자유주의 하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이기에, 국제적인 연대와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삼성만의 문제,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임을 폭로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 말입니다.

3. 반올림의 활동 영역

① 연대 (Solidarity) - 반도체 자본과 맞서 싸우는 이들과의 연대, 삼성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연대, 해

외 반도체 산업의 피해에 대응하는 국제 연대

- ② 피해자 지원·상담 (Help) - 반도체 전자산업 피해 노동자 상담과 법적 대응 지원, 산업재해 인정 투쟁
- ③ 실천 (Action) - 노동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직접행동, 정부와 기업의 산재 은폐에 맞선 행동
- ④ 연구 (Research) -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연구, 해외 반도체 산업 관련 연구 논문, 문헌 수집 및 번역,
- ⑤ 홍보 (Public Relations)- 사회 이슈화를 위한 각종 언론 홍보 및 선전

4. 참여단체

건강한노동세상, 경기비정규노동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대학생 사람연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주의노동자당 경기준비모임,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SF), 진보신당,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지역 삼성 직업병 대책위원회 / 충남지역 삼성 직업병 대책위원회)

5. 온라인 활동

반올림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영문블로그 <http://stopsamsung.wordpress.com/>

트위터, 페이스북 @sharpzglory

* 연락처

제보/문의 : 02-3496-5067, 010-8799-1302(이종란)

이메일 : sharps@hanmail.net

* 후원계좌

활동비후원 489701-01-479168 국민은행 김재천(삼성반도체대책위)

피해자후원 489701-01-472635 국민은행 김재천(삼성반도체대책위)

* 관련 도서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희정, 아카이브(2011)

『사람냄새』, 김수박, 보리(2012)

『먼지 없는 방』, 김성희, 보리(2012)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 공유정옥 외 옮김, 메이데이(2009)

* 관련 영화 두 편

1. 다큐멘터리 영화, <탐욕의 제국>



탐욕의 제국 | The Empire of Shame

감독 : 홍리경

제작국가 : 한국

제작년도 : 2013

상영시간 : 110'

장르 : 다큐멘터리

키워드 : 자본주의, 대기업, 산업재해, 여성노동자, 반도체, 직업병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의 산업 재해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딴 세상 같았어요. 회사에 가면 남녀 모두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게 조그만 다른 나라 같았어요. 신기했어요. 그 안에 회사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내가 거기에 있다는 자체가 기분이 좋았던 거 같아요. 라인 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기억나고... 진짜 로봇들이 일하는 거 같았어요.” 깨끗한 방에서 하얀 방진복, 하얀 방진모, 하얀 마스크를 쓰고 눈만 내놓고 일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2. 극 영화, <또 하나의 가족>

제작두레 홈페이지 : <http://anotherfam.com/> (제작두레 함께해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스물셋 고 황유미님..

딸의 억울한 죽음에 진상규명을 호소하며 산재인정을 받기위해 싸워나가는 아버지 황상기님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또 하나의 가족>이 제작됩니다. 이미 이 영화 제작을 위해, 지난해 11월 굿편딩을 통해 2071명이 참여하셔서 1억여원의 마중물을 모아주셨는데,



다시한번 "제작 두레"를 통해 영화제작을 위한 후원모금을 진행합니다. 이 영화를 원하는 수많은 대중들과 함께 만드는 영화가 되길 희망합니다.

제 목 : 또 하나의 가족

감 독 : 김태운

출 연 : 박철민, 윤유선 외

제 작 : 또하나의가족제작위원회

순제작비 : 10억

크랭크인 : 3월 18일

개 봉 : 2013년 9~11월(예정)

해외진출 한국기업 문제에 대한 대응의 과제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1. 해외진출한국기업 문제의 사례 및 유형

1) 노동착취형

- ▶ 저임금을 목적으로 동남아시아/중남미에 진출한 의류/봉제/전자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음. 생산비절감을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 및 한국식 권위적 기업문화를 강요하고 노조는 어용노조만 허용하거나 아예 허용하지 않음
- ▶ 외자유치를 위해 조성한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것이 보통. 노조를 결성하면 해고 및 징계하고 공권력과 용역을 동원.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 국제사회가 개입하면 회사를 폐쇄하거나 이전해버림

2) 자원개발형

- ▶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에 진출한 석유/가스/광물자원 개발사업에서 발생. 공기업 및 사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예산이 투입되거나 정부차원에서 사업을 독려하는 것이 특징임.
- ▶ 인권 및 환경 관련 대책이 사실상 없음. 버마가스사업이나 포스코 인도 사업과 같이 주민들과 국제사회가 주목할 경우에 사회공헌사업시행. 한국사회도 사업의 성과에만 관심 있음.

2. 해외한국기업 문제에 대한 대응

- ▶ 왜 대응해야 하는가: 해외 한국기업에서 발생한 인권/노동/환경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의 연대를 절실히 요구-> 현지의 거버넌스로는 해결이 어려움->한국본사/한국정부의 개입 및 사태해결 노력이 필요->한국시민사회가 정부와 기업에 대해 압력을 가해야함.

▶왜 대응이 어려운가?

- 1) 한국기업: CSR은 대기업만 하는 것. 그나마도 CSR은 병원이나 학교 지어주는 걸로 끝. 한국에서도 안 되는 노조인데 어딜 감히. 기업은 애국자고 반대하면 빨갱이.
- 2) 한국정부: 한국정부의 역할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한국기업인 보호. 노조탄압이나 인권침해 문제는 해당 국가의 일. 국제사회의 압력을 압력으로 느끼지 않음(미 국무부가 관심을 가진 사조오양진 정도만 예외)
- 3) 한국사회: 다른 나라 일까지 신경 쓰기 힘들. 먹고살려면 외화 벌어야 하고 자원 확보, 일부 한국인 개인의 문제 혹은 불쌍한 외국 사람의 문제
- 4) 대응수단의 미비: 사법대응이 어려움(관할권 문제, 비용 문제, 효과문제). UN인권시스템 활용도 쉽지 않음(기업과 인권 분야는 진정절차가 없는 워킹그룹 형태, 사회권 선택의정서 미비준 등). 그나마 있는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도 한국정부의 파행적 운영으로 작동하지 않음. 효과적인 대중 캠페인을 조직하기 어려움(한국NGO의 역량부족 및 대중적 관심 부족)

▶ 긍정적인 신호들:

- 1) 국제사회의 변화: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음. 한국정부와 기업도 언제까지 이 흐름에 역행할 수 없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 중.
- 2) 기업의 인식변화: 선진국의 소비자 및 바이어와 투자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음.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화재사고) 개도국 시장 점유를 위해서도 이미지 관리가 필요한 시대. 과거와 같은 생색내기식 자선사업으로는 한계에 부딪힘
- 3) 정부의 변화: 개도국에 ODA 사업을 하거나 청년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개도국에 청년일자리 사업을 전개할 경우에 현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임. UN과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1) 역량 결집: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1건이라도 해결되는 사례를 만들어야 함. (예: 포스코의 인도사업장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공대위 구성)
- 2) 연대 강화: 지역적 차원의 연대 구축(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및 귀환노동자, 노동조합간의 연대, 분야별 시민사회의 국제네트워크(개발,환경,인권,여성,평화,종교등등)강화. 연대의 강화는 상호간의 호혜와 신뢰를 작은 것에서부터 구축해나가야.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운동이 초국적기업문제 전반에 대해 총체적인 대응 필요
- 3) 구제 및 예방 제도 마련: OECD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역할 강화, 국민연금의 운용/해외자원개발사업/KOTRA운영/수출입은행 정책 등에 있어서 국제기준 적용 및 준수의무 요구.
- 4) 근본적인 대책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수준을 높이는 것: 과거에 비해 직접적인 폭행은 줄고 공무원들의 태도에도 일정 변화. 그러나 반노조 정책과 기업에 대한 특혜를 당연히 여기는 한국사회의 기류가 바뀌지 않으면 해결이 요원한 문제임

※ 추가 관련 자료:

국제민주연대 홈페이지(www.khis.or.kr)

좋은기업센터(<http://csr.action.or.kr/>)

한국인권재단의 기업과 인권아카이브

(<http://www.humanrights.or.kr/?mid=archive&category=1437>)를 참조

경제개혁연대 연도별 활동

■ 1997년

1.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

-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의 시작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은 97년 2월 한보철강에 부실여신을 제공해 은행을 부실하게 한 제일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소액주주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참여연대는 거리 캠페인을 통해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을 규합하여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참가, 은행 경영진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따져묻는 등 주주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였다. 그러나 은행측은 주주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오히려 주주들의 발언을 저지하려 하였으며, 정당한 표결 절차도 없이 의결을 강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국내최초의 주주대표소송

주주총회 이후 참여연대는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목적으로 거리캠페인과 신문광고, 주주들에게 일일이 발송한 편지작업을 통해 주주들을 모집하였으며, 이 중 61명의 주주들이 국내최초로 소액주주에 의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서 제기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시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주식발행수의 0.5% 이상의 지분이 필요했다. 참여연대는 97년 6월, 제일은행 총주식의 0.5%가 약간 넘는 84만주를 가지고 이철수 전 행장 등 4명의 이사들을 상대로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승소

97년 12월, 참여연대는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강행된 주주총회는 무효라고 판결하여, 그동안 요식절차로 전락되어온 주주총회 관행에 쐬기를 박았다.

2.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97년 3월 24일 삼성전자가 600억원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이 450억원, 삼성물산이 150억원을 인수하였다. 私募는 公募와 달리 발행회사가 마음대로 특정인에게만 채권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용과 삼성물산이 인수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발행된 것으로, 일반 소액주주의 주주평등권인 주식인수권을 침해하고 의결권가치를 희석한 것이며, 전환가격이 발행일의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97년 6월24일 삼성전자, 이재용, 그리고 삼성물산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발행한 전환사채

에 대하여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삼성전자 사모전환사채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재판부는 9월 30일에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삼성측은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기 하루전에 기습적으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버렸다. 이렇게 법질차마저 무시하는 삼성측에 대해서는 담당재판부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10월 7일 이재용과 삼성물산이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한 신주에 대하여 처분 및 상장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의 소'를 '신주발행무효청구의 소'로 변경했다.

- 사법부의 엇갈린 판결

97년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참여연대가 낸 삼성전자주식 처분금지가처분 및 상장금지가처분 요청사건에서 이재용씨 소유주식에 대해 참여연대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재용씨를 상대로 한 가처분 결정문에서 “제3자 또는 특정주주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재용에 대한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은 자금조달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오로지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이재용씨는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고, 삼성전자와 증권거래소는 이재용씨 소유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수원지방법원은 본안소송인 삼성전자 신주발행무효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바, 참여연대는 위 본안 판결에 곧바로 항소하였다.

■ 1998년

1.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

- 제일은행 감자

정부는 98년 1월 부실이 심한 제일은행에 대해 8.2대1의 감자명령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경영에 참가할 아무 권한도 없는 소액주주들에게 경영감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감자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정부기관과 IMF에 공식서한을 보내는 한편, 제일은행 이사회의 감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감자가 강행되었다.

- 주주총회 참가

비록, 감자 및 증자 조치로 인해 94%에 달하는 절대지분을 보유하게 된 정부의 의결권행사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참여연대는 98년 2월 무려 6시간여동안 계속된 제일은행 118기 주주총회에도 참가하여 끝까지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 주주대표소송 승소

주주대표소송은 1심에서 참여연대와 소액주주들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주주대표소송은 국내 사법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고, 또 최근 부실경영을 한 기업주와 경영진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그 귀추가 매우 주목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원고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여 이철수 전 행장 등 4명의 피고들은 총 400억원의 손해액을 은행에 배상하도록 하였다. 이는 소액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준 것일 뿐만 아니라, 경영인의 책임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2. 삼성전자 소액주주운동

- 98년도 정기주주총회 참가

98년 들어 참여연대는 신문광고, 캠페인 등으로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을 규합, 본격적인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했다. 98년 2월 11일 전환사채 발행 무효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중지,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정관개정 등 소액주주의 요구사항을 삼성전자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였고, 3월 4일에는 주주제안으로 소액주주들의 정관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드디어 3월 27일 참여연대는 장장 13시간동안 진행된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Pan-Pacific 이라는 해외법인을 통해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에 위장출자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였고 전환사채 발행 및 중앙일보와의 내부거래 등에 대해 추궁하였다.

- 이사회이사록 열람거부에 대해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참여연대는 자동차 부당지원 의혹과 중앙일보와의 내부거래 책임을 밝히기 위해 삼성전자의 이사회이사록 열람 신청을 하였으나 삼성전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는 상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한 것이며, 98년 6월 12일 수원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부과결정을 내렸다.

- 이사회이사록 조작혐의 고발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총수인 이건희씨와 삼성전자 대표이사 이윤우, 윤종용씨를 삼성전자 이사회이사록 위조 혐의로 4월 21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들은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사회를 개최한 듯 이사회이사록을 꾸몄다. 이같은 사실은 참여연대가 이사회이사록에 출석이사로 기명날인되어 있는 이사들 중 일부가 회의일자에 해외에 체류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밝혀낸 것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이사회를 유명무실하게 하여 상법이나 정관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며, 총수 1인에 의한 독단적 기업운영의 증거이다.

-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 외자도입법 등 위반으로 고발

(Pan-Pacific과 체결한 합작투자계약관련)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 및 삼성자동차와 각 회사 대표이사들을 외자도입법과 외국환관리법,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6월 11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삼성자동차의 주요주주들인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는 지난 97년 1월 30일 아일랜드소재 Pan-Pacific Industrial Investments (이하 PP)사와 더불어 삼성자동차에 미화 2억 8천 2십만달러 상당의 2500억원을 신규출자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은 형식상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직접투자와는 달리 확정된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자동차가 그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와의 공모하에 상업차관을 도입한 것이다. 당시 한국법으로는 상업차관 도입은 외자도입법과 외국환관리법상 재정원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사안인 바, 합법적인 상업차관도입이 불가능하자 직접투자를 위장하여 불법적으로 상업차관을 도입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측은 상업차관임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한 채 외자도입신고를 하고 주요 사항들은 이면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허위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외자도입법과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중요한 자본거래에 대해서

는 반드시 공시토록 규정한 증권거래법도 위반하였다.

- 증권감독원, 삼성전자(주)와 삼일회계법인에 '주의' 조치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주) 제29기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 점을 발견하고 지난 4월 16일 증권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하였고, 증권감독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리를 벌인 결과, 7월 21일 삼성전자(주)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부실회계처리와 부실감사를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삼성전자(주)와 삼일회계법인은 제29기 결산기('97.1.1-12.31)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주식사항으로 기재해야할 삼성자동차 주식 옵션거래 내용을 누락시키고, 외화자산·부채의 내용 및 외화환산 손익 중 일부 내용, 종업원대여금 내역 등을 기재하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되었다.

증권감독원의 조치는 그동안 회계·공시 의무를 소홀히 해온 기업과, 부실감사를 일삼아온 회계법인에 대하여 일침을 놓은 것이다.

-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11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이진희를 비롯하여 윤종용, 이학수, 최도석씨 등 총 11명의 전·현직 이사들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행위와 계열회사인 중앙일보와의 부당내부거래행위, 계열회사인 삼성물산(주) 및 삼성중공업(주)와의 부당내부거래행위, 이천전기(주)에 대한 출자와 지급보증행위, 보유 유가증권의 부당한 저가매각행위등 위법행위로 회사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주주 22명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98년 10월 20일 삼성전자(주) 이사 11명이 3천4십3억4천5백2십만원을 연대하여 삼성전자(주)에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제일은행에 이어 두번째로 제기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은 현재 우리 사회 경제위기 속에서 재벌이나 정부도 제대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못한 때, 일반 시민인 소액주주와 시민단체가 재벌기업의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고 총수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3. SK텔레콤 소액주주운동

-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997.12.23 개최된 회의에서 SK텔레콤(주)에게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이유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은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선경그룹 회장인 최종현 자신이 94.6%의 절대 지분을 갖고 있는 선경유통(주)와 자신의 장남인 최태원씨와 사위 김준일씨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텔레콤(주)에 막대한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SK텔레콤은 선경유통이나 대한텔레콤에게 과도한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고가로 장비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전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SK텔레콤의 경영진은 SK텔레콤의 이익을 빼돌려 최종현 회장과 그 가족들에게 갖다 준 것이다.

- SK텔레콤 소액주주 요구사항 수용

참여연대는 이렇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회사의 이익을 빼돌리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SK텔레콤을 상대로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였다. 관할부처인 정보통신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식서한을 보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철저한 이행점

검을 요구하는 공식서한을 발송했으며,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한국통신 등 기관투자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주주들을 적극 규합하였다.

참여연대는 2월 11일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회사측에 전달하고, 주주총회 및 이후 대표소송에 대비하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주주총회 직전인 3월 26일 소액주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이에 따라 3월 2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식 사과와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정관개정,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이 이루어졌다.

- 계열사 지원자금 회수

주주총회 이후 SK텔레콤은 대한텔레콤에 유출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98년 10월에는 사외이사들의 요구에 따라 계열사에 지원된 자금을 전액 회수하였다. 이는 재벌기업 스스로가 소액주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자기변신을 이루어낸 것으로 소액주주운동의 소중한 성과이다.

4. 5대재벌 개혁을 위한 ‘국민 10주 갖기 운동’

참여연대는 98년 하반기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10주갖기운동’을 전개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소액주주운동의 성과를 다른 5대 재벌기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대우, 현대중공업, LG반도체 등을 추가하였다. 기존 주주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5개 기업 주식을 10주씩 구입하여 참여하도록 한 국민10주갖기운동에는 시민의 힘으로 재벌을 개혁하자는 취지에 공감한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 1999년

1. 5대재벌 주주총회 참가

참여연대는 99년 1월 삼성전자, SK텔레콤, (주)대우, 현대중공업, LG반도체 등 5개 기업에 대한 소액주주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주주총회 참가를 선언하였다. 이들 기업들은 모두 3월 20일 같은 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여연대의 주총 참가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참여연대는 LG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4개기업 주주총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액주주들의 이해를 대변하였다.

- 삼성전자 주주총회

참여연대는 주주총회에 앞서 정관개정안을 주주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가 제안한 정관개정안과 회사측의 정관개정안이 맞붙게 되었다. 회사측은 예년과 달리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으나, 몇 개 조항에서 심각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8시간 30분동안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는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계열사 지원자금 회수 및 책임자 문책, 계열사 부당 지원 금지, 집중투표제 도입,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관개정 등을 요구하였으나 표대결에서 패배하여 결국 회사측의 안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주주총회 진행 과정에서 표결방식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회사측과 논란이 있었는 바, 참여연대는 표결방식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을 막고자 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하고 주주총회일부결의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99년 12월 29일 담당재판부는 표결방식에는 하자가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파장을 고려하여 재량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SK 텔레콤 주주총회

SK텔레콤은 소액주주 요구사항 중에서 감사위원회 도입은 수용하였으나,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국내외 주주들의 지분을 규합하였다. 참여연대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경영진에게 경영상의 문제점을 질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하는 정관개정을 막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벌였으나 찬성 75%, 반대 25%로 패배하였다. 정관개정안은 출석주주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반대표를 조금만 더 확보했다면 집중투표제를 살릴 수 있었으나 18%지분을 가진 한국통신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회사측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였다.

-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현대중공업은 소액주주 요구사항 중 일부를 수용하여 현대자동차의 기아·아시아자동차 인수 자금 지원 계획을 철회하였다.

참여연대는 주주총회에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측은 참석한 주주들의 가방을 모두 수색하고 주주들의 발언권을 무시한 채 의사진행을 강행하는 등 주주권한을 침해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주) 대우 주주총회 및 주주대표소송

참여연대는 주주총회에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였으며, 주주총회 이후 소액주주 20명을 모아 (주)대우 김우중 회장을 상대로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손해액 23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2. 현대전자 주가조작

- 금융감독원, 현대전자 주가조작 적발

4월 8일 금융감독원은 현대그룹이 98년 5월부터 11월까지 현대상선과 현대중공업의 자금 수천억원을 동원하여 현대증권을 통해 시세조종주문을 내어 현대전자 주가를 3배 가까이 끌어올린 사실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 기간동안 정주영씨 일가와 현대계열사들은 보유중이던 현대전자 주식을 처분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현대상선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만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을 뿐, 정씨일가와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현대증권 불거래 운동

참여연대는 정씨일가와 주가조작 창구였던 현대증권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현대증권을 상대로 불거래운동캠페인을 2달여 기간동안 전개하였다. 또한 정주영씨 및 정씨일가 2세 경영인들과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 현대전자 주가조작 검찰수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

검찰은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하여 현대증권이 주가조작을 주도, 1,5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정씨일가에 대한 수사의지도 표명하였다. 그러나 사건 수사 초기부터 현대측의 강력로비설이 끊임 없이 나돌고 청와대와 정치권의 현대 옹호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이 사건 최종책임자는 이익치 회장이라고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 과정 내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계속하였다.

한편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형사재판 결과, 이익치 회장 등 관련자들에게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현대증권에는 70억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어이 없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재벌 로비에 굴복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시민운동 차원에서 현대전자 주가조작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현대전자 주주들을 규합하여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과 이익치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제일은행 소액주주 지분 무상소각

정부가 다시 제일은행 소액주주 지분 무상소각을 결정함에 따라 참여연대는 정부보유 주식은 병합하여 지분을 남겨두고 소액주주 소유 주식만 전량소각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예관한법을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자본금감소명령처분일부취소청구소송 및 자본금감소명령처분일부효력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일은행을 상대로 이사회결의일부효력정지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4. SK텔레콤 임시주주총회

99년 6월 SK텔레콤이 30% 규모의 유상증자 실시를 결의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참여연대는 유상증자 실시가 자금확보 목적이 아니라 SK그룹의 지분 늘리기 시도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SK텔레콤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강행하자, 사외이사과 사외감사, 주주들이 강력히 반발하여 8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안건은 유상증자 문제로 인한 손길승 이사 해임과 주식액면분할, 그리고 참여연대가 주주제안한 사외이사 선임, 이 세가지가 상정되었고, 참여연대는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의견권 위임을 받아 참석하였다. 그러나, 주총 직전 SK상사와 ㈜SK가 타이거 펀드로부터 SK텔레콤 주식을 대거 사들여 SK텔레콤은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고, 참여연대는 최대 49%까지에 이르는 지지를 확보하였으나, 결국 모두 회사측 안대로 통과되었다.

5. 삼성의 변칙증여와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문제

- BW 저가 발행을 통한 삼성의 변칙적인 경영권·재산 승계

삼성SDS는 99년 2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 230억원 어치를 발행하여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를 비롯한 자녀 4명과 삼성임원 2명 등 특수관계인 6인에게 매각하였다. SDS는 상장이 예정된 기업으로 주식 실거래가격이 15만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재용씨등에게 매각한 BW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주당 7,150원으로 정해놓고 있어, 인수자들에게 엄청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BW 발행을 부당내부거래로 적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SDS BW발행이 그동안 비상장 우량계열사의 주식이나 CB를 인수시켜 상장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거나 적은 돈으로 지분을 늘려온 삼성그룹의 3세승계 작전의 일환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하였다.

참여연대는 BW의 부당한 저가 발행을 결의한 책임을 물어 김흥기 대표이사와 이학수 감사를 배임죄로 고소하고, 이재용씨 등 인수자와 SDS를 상대로 SDS BW 처분 금지 및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다.

- 삼성자동차 부채를 계열사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에 대한 삼성과 채권단과의 합의안에 따라, 삼성자동차 부채에 지급보증을 하지도 않고 삼성자동차의 부실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삼성전자도 손실분담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이사들에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못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이사회는 채권단과의 합의 이행을 결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이진희 회장이 저야할 부담을 계열사 및 그 기업의 소액주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같은 계열사 손실분담에 대하여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 2000년

1.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항소심 승소

2000년 1월 4일,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항소 선고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려 이철수 전행장 등 피고 4인으로 하여금 10억원을 은행측에 배상하도록 하였다. 99년 6월 제일은행 소액주주들 보유지분 전량소각 조치로 인해 소액주주들의 지분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각하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은행측이 공동소송참가인으로 참여함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청구는 각하하고 은행측의 청구는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손해배상 금액이 10억원으로 된 것은 제일은행이 공동소송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기 때문)

비록, 원판결을 그대로 확정된 것은 아니나, 소액주주들의 청구가 각하된 이유가 소송유지에 필요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때문인 만큼, 사실상 1심 판결의 취지를 살려 이사들의 불법경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2. 데이콤, 참여연대의 기업지배구조제안 수용

데이콤을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 대상기업으로 포함한 첫 해인 2000년 3월 데이콤이 참여연대가 제안한 경영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수용하였다.

참여연대는 과거 소액주주운동 대상기업인 LG그룹 계열사 LG반도체가 현대전자에 인수합병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LG그룹의 계열사인 데이콤을 소액주주운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1월 11일 데이콤에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장치'에 대한 제안을 전달하였고, 이를 데이콤과 데이콤의 최대주주인 LG가 적극 수용하였다.

참여연대와 데이콤이 합의한 안은 데이콤 이사회 구성원중 사외이사를 50%이상 선임하고, 이사회의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다는 것, 감사위원회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계열사간 출자 및 내부거래시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합의안은 3월에 열린 데이콤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되었다.

3. 현대투신 불법자금운용 실태발표와 손해배상소송제기

참여연대는 2000년 4월 24일 현대투신의 불법적인 자금운용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현대투신이 교묘한 방법으로 고객의 재산을 축내 사실을 발표하였다.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현대투신의 바이코리아 펀드중 대표적인 펀드인 르네상스 1호 펀드와 나폴레옹 1호 펀드의 각종 장부를 열람하여, 각 1345억원과 217억원의 불량 유가증권을 고객재산에 편입하여, 고객들에게 223억원 및 67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것을 밝혔다.

바이코리아 펀드를 운용하는 현대투신운용이 펀드자산의 5%까지 다른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계열사인 현대투신증권이 보유하던 부실채권을 모아 부실채권상각전용펀드(일명 **Bad Fund**)를 조성한 후 여기서 발행한 불량 수익증권을 바이코리아 펀드에 고객 몰래 편입하였다가 이를 상각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현대투신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비단 현대투신운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투신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있는 잘못된 관행이고, 이러한 행위가 투신사 고객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투신사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 현재의 투신업계 전반의 위기를 가져왔다.

참여연대는 현대투신운용과 현대투신증권 등에 대해 바이코리아 펀드의 불법운용실태를 전면공개하고 손해입은 투자자들에게 보상할 것 등을 요구하였는데, 회사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8월 7일 르네상스 1호와 나폴레옹 1호 펀드에 가입한 18명의 투자자들을 모아 현대투신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4. 삼성SDS가처분 항고심 승소

2000년 5월 9일 서울고등법원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매각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제기한 신주인수권행사 등 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재판의 결과 BW인수자들인 이재용씨를 비롯한 이진희 회장의 자녀들과 삼성의 임원들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재판의 결정은 삼성그룹이 지난 4년동안 삼성SDS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하여 편법적으로 이재용씨에게 재산권과 경영권을 상속하기 위해 시도해온 것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삼성SDS는 99년 2월 26일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원치를 발행하면서 주당 7,150원에 이재용씨 등에게 발행하여 당시 시가 기준 1,500억원, 2000년 5월 시가(47만원) 기준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누리게 해주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99년 12월 1일자로 법원에 신주인수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2000년 2월 22일 서울지방법원 재판부가 참여연대의 주장을 기각하자 다시 곧바로 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한 본안소송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 무효소송도 2000년 4월 29일에 제기한 상태이다.

5. 송자교육부장관의 실권주 인수 문제와 4대그룹 실권주 배정실태 발표

2000년 8월 참여연대는 당시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송자 전 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시절 4차례에 걸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실권주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송자 전 장관이 자기 돈이 아닌 회사의 돈으로 실권주를 인수하여 대규모 시세차익을 얻는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의 이사들이 회사자금으로 시세보다 싼값에 자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안전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부도덕한 내부자거래였기 때문에 송자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였고 결국 송자 장관은 스스로 물러났다.

참여연대는 송자 전 장관의 경우를 계기로 4대그룹의 실권주 배정실태를 조사하여 2000년 11월 1일 '4대그룹 상장계열회사 실권주 배정실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에서 참여연대는 4대그룹이 총 105회의 유상증자 중 48%를 특정인에게 배정한 사실과 특히 삼성그룹의 경우 실권주를 임원들에게 배정한 비율이 92.5%에나 이르고 그들이 얻은 시세차익이 총 457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실권주는 주식을 인수하는 시점에 이미 시세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수자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이며, 기존 주주들에게는 지분이 희석화되는 손해를 끼치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권주를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자기자신에게 배정토록하는 것은 자신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91조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6.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입법운동

참여연대는 2000년 10월 16일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상법개정 입법청원'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참여연대는 상법 제382조의 2 '집중투표제'의 단서조항(정관배제조항)을 삭제해 주주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는 법률개정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집중투표제는 98년 11월 도입될 당시 기업들이 집중투표제를 거부할 단서조항을 둬으로써 2000년 현재 거의 어떤 기업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제도 도입과 동시에 사문화된 제도였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시세조작이나 분식결산, 허위공시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다수 투자자들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수단으로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는 입법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입법운동을 위해 참여연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 인터넷 사이트(<http://cleanstock.or.kr>)를 개설하여 사이버 서명을 받았는데 서명사이트를 개설한지 40여일 만에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재경부와 법무부 등에 항의메일 보내기 등의 사이버 캠페인도 벌였다. 또 국회의원과 경제, 경영, 법학 교수, 그리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서명운동도 전개하여 1천명이 넘는 전문가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에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여 송영길 의원을 비롯하여 34명의 의원들이 참여연대의 입법청원과 동일한 안을 입법발의하도록 하였다. 2000년말 현재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 법안들은 12월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결국은 국회파행 등으로 인해 2001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 2001년

1. 주주총회 - 사외이사 선임 운동

참여연대는 2001년 주주총회에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을 목표로 하였다.

삼성전자의 경우 주주제안을 통해 전성철 변호사를 비상임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의결권 대결을 벌였으나 16%의 표를 확보하는데 그쳐 실패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인 주주총회 서비스 기관인 ISS와 우리나라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은 참여연대가 추천한 후보를 지지하였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이진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의 경영일선 참여 문제,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98년도에 참여연대 추천으로 사외이사로 선임된 남상구 이사가 재선임되었으며, 참여연대는 주주총회에서 SK C&C와의 부당내부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많은 성과를 남겼던 박진원 변호사의 추천에 따라 강신욱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참여연대는 타계열사에 대한 출자 및 지급보증 해소 계획을 질의했다.

2. 현대투신 매각 관련 대응

2001년 8월 23일, AIG 컨소시엄이 유상증자 제3자 배정을 통해 현대증권에 4천억원을 출자하고 이를 현대투신에 재출자하는 안이 포함된 현대 투신 매각협상이 체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AIG는 출자조건으로 5% 우선누적배당이 주어지고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시가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인 주당 7천원으로 매입하기로 하여, 정부가 우량기업인 현대증권을 굴욕적인 조건으로 '끼워팔기'식으로 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는 즉각 현대증권 끼워팔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9월 17일 현대증권 소액주주들과 함께 현대증권 신주발행유지가처분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신청했다. 가처분은 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다시 서울 고법에 항고하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중 AIG그룹과의 매각 협상 자체가 결렬됨에 따라 가처분을 취하하였다. 현대투신 매각협상은 AIG그룹의 지속적인 요구조건 변경으로 지연되다가 결국 정부가 AIG그룹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여 결렬되었다.

3. 재벌개혁 정책 후퇴 반대 및 집단소송제 도입운동

2001년 5월 들어 재계는 각종 재벌개혁 정책들을 완화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결국 재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기하며, 재벌 계열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등 재벌개혁 정책들을 후퇴시켰다. 참여연대는 이에 반대하여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재벌규제 관련법 의 개악 저지 운동을 벌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2000년부터 벌여온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운동은 재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참여연대는 증권집단소송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4.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승소

2001년 12월 27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8년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이진희 회장, 윤종용, 이학수, 최도석 이사 등 총 11명의 전·현직 삼성전자 이사들을 상대로 총 3천 51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로 이진희 회장에 대해 원고의 주장대로 75억원 전액의 손해배상 지급을 선고하고, 부실기업인 이천전기를 인수하기로 결의한 최도석 등 8명의 이사들에게는 276억원을 연대하여 배상할 것, 삼성중합화학 유가증권 저가매각 결의에 대해서는 최도석 등 5명의 이사들이 626억원을 배상할 것 등 총 977억원을 회사에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

이번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승소판결은 지난 97년 제일은행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에 이어 두번째이며, 비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서는 최초이다.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저버린 재벌총수와 경영진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처분을 넘어서 경영진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벌기업의 이사회 운영에 경종을 울린 것이며, 앞으로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실질화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002년

1.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반대

2002년 9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대한생명을 한화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최종의결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한화그룹의 인수자격에 대해 공자위 민간위원조차 의문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화에 매각함으로써 졸속, 특혜 매각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대한생명은 무리한 사업확장과 계열사 부실로 인해 IMF 이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99년 국영보험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정부는 기업정상화를 위해 무려 3조 5천억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민영화를 위한 매각협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화-오릭스 컨소시엄이 유력한 인수대상자로 떠올랐으나 한화그룹은 이미 충청은행 등 금융기관을 부실화 시킨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한화파이낸스의 경영 부실로 대주주인 한화증권이 잠재적 부실을 안고 있고, 2002년 초 주요 한화계열사들이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은 데다가, 지난해에는 7,32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여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자체자금 동원능력마저 의문스러운 등 현행 법규상 보험업에 진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법적 요건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그룹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화그룹의 인수 자격은 논외로 여기며 가격논쟁으로만 몰아갔으며, 인수 후 감독만 잘 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를 기정사실화했다.

참여연대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시도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한화의 인수자격 미달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의 결정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매각대상 최종결정 후에는 올 초 금감위가 적발한 (주)한화와 (주)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주)의 분식회계를 검찰에 고발하여 한화그룹의 인수자격에 대한 검증작업을 계속해 나갔다. 이는 한화그룹이 계열사 주식거래를 통해 발생시킨 부의 영업권을 일시에 이익으로 계산함으로써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축소하여 대한생명 인수 자격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충족시키고, 차입금을 계속 조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고의적인 분식회계였다.

참여연대는 향후에도 대한생명의 경영 과정에 대해 계속 철저한 감시를 하여 대한생명이 다시 부실화되는 것을 막도록 노력할 것이다.

2. 증권집단소송제 제정 촉구

참여연대가 2000년부터 시작한 증권집단소송법 입법 운동이 2년째를 맞았다.

증권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 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 소송할 경우 해당 기업의 모든 투자자들도 그 결과가 돌아가는 제도로서 비용면이나 효과면에서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법적권리의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회사의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투자자 전원의 손실을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어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현행법상에서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생겨도 각자가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이 소송을 내거나, 아예 소송제기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다수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집단소송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미 98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었으나 재계의 강력한 반발과 국회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법안 통과가 좌절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00년 10월 증권집단소송법안을 직접 입법청원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국회의원 34명의 발의로 법안을 상정하였다. 이후 참여연대는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전문가 1천인 서명을 비롯하여 온라인 서명운동, 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펼쳐왔다.

그러나 정부안이 제출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함께 심의하자는 것을 이유로 1년이 넘도록 법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국회는 2001년 12월 정부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법안

통과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목표대로 2002년 4월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올 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과 논평을 발표했으며 증권전문 인터넷 사이트와 함께 국회 앞에서 법제정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공청회는 물론이고 어떠한 심의 계획도 정하지 못한 채 국회는 폐회했고, 지난 10월로 입법 운동 2년째를 맞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법 입법운동 2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안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조속한 법률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은 차기 정권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미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제도인만큼 새정부 출범과 함께 빠른 시일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 (주)두산 특혜성 BW 발행관련 문제제기

참여연대는 10월 말, 1999년 (주)두산이 발행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대부분 인수하여 편법증여 및 그룹 내 지배권 확대를 노린 사실을 발표하였다.

99년 7월 (주)두산은 해외에서 BW 1억달러어치(한화 1,187억 상당)를 공모발행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이 BW는 발행되자마자 신주인수권과 사채가 분리되어 두산그룹 지배주주 일가 32명에게 전체의 70%가 매각되었다. 그리고 약 두 달 뒤, 두산그룹 3세대는 전체 물량의 40%가 넘는 자신들의 보유지분을 모두 4세대에게 넘겼다. 해외에서 공모형식으로 발행한다고 한 BW의 대부분을 총수일가가 소유했다는 것은 BW의 발행 전부터 총수일가가 인수할 것을 의도하고, 국내발행할 경우 따르는 제약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공모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한 (주)두산은 BW 발행 당시 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주가하락에 따라 자동하향조정된다는 옵션조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주가하락에 따른 행사가격 조정’이라는 옵션은 신주인수권 소유자에게는 주가가 하락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주식을 획득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인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실제로 99년에 비해 (주)두산의 주가가 1/5 수준으로 떨어진 현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요구할 수 있는 주식은 5배가 넘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 주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조정 조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일반투자자들이 알기 어렵게 만든 불성실공시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이 BW의 발행 자체가 재산 증여 및 지배권 확대를 노린 고의적인 행위였음을 지적하며 두산그룹과 지배주주 일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주)두산은 당시 회사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며 모든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고, 금감원은 지난 11월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주가하락에 따른 행사가 조정 조항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시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미공개정보이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주가하락에 따른 행사가 조정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보이며, 행사가 조정 조항을 명시한 발행계약서는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 문서이므로 결국 미공시된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하고, 공시제도를 철저히 감독해야할 금감원이 증시불공정행위를 감싸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산그룹의 BW관련 의혹은 최근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를 외치는 재벌기업이 아직도 편법 상속과 경영권 세습 등 재벌의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재벌개혁의 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이 조사중인 해외발행을 가장한 국내발행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법적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할 예정이다.

4. 외환은행 주주총회 참가

참여연대는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2002년부터 소액주주운동의 대상을 재벌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환으로 외환은행의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첫 금융기관 주총에서 참여연대는 질의의 초점을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에 맞추고 외환은행의 경영실적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주요채권은행으로 현대건설 자구 계획 이행과정에서 정몽헌 회장의 손실부담을 제대로 따졌는지 여부 △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외환은행 역할 △코메르츠뱅크의 외환은행에 대한 장기전략 △ 신입행장 선임 문제에 대한 입장 등이 질의의 중심이 되었다.

참여연대는 외환은행의 지분 75% 이상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코메르츠은행소유였기 때문에 의결권 대결은 하지 않았지만 의안에 따라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혔다. 특히 정관 34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2항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정관을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변경하는 주총의안에 대해서, 이사회 의장직을 사내이사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외환은행의 현재 구조가 매우 모범적인 구조라고 평가하고 따라서 현행의 정관을 유지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공방 끝에 정관개정 및 이사선임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외에도 외환은행의 요주의 여신 비율이 다른 은행에 비해 높다는 사실과 현대그룹 계열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대주주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주식 이동에 대해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다.

무려 10시간 동안 진행된 주총에서 참여연대는 외환은행 경영진과 끈질긴 설전을 벌였으며, 주총 후에도 당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외환은행의 성실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특히 은행의 경영정상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은행장 선임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계속하며 사외이사들에게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외환은행 주총참가를 시작으로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에 계속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5. LGCI 주주대표소송제기

1999년 LG화학은 LG그룹 총수일가에게 LG석유화학의 지분 70%에 해당하는 주식 2,744만주를 주당 5,500원에 매각함과 동시에 총수일가가 보유한 LG칼텍스정유와 LG유통의 주식을 각각 97,000원과 185,000원의 고가에 매입하였다. 이후 LG석유화학이 상장됨에 따라 총수일가는 2~4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여 최소 1,807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00년에 LG그룹 총수일가와 계열사간의 부당한 주식거래를 조사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였고, 2001년 1월, 공정위는 LG화학이 그룹 총수일가들에게 주식을 헐값에 매각한 것은 부당내부거래라고 판정하여 79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LG화학은 또다시 올 4월 총수일가로부터 자사가 매각했던 LG석유화학의 주식 632만주를 15,000원에 되사주어 총수일가에게 주당 9,500원의 매매차익을 실현시켰다.

참여연대는 LG화학이 총수일가로부터 석유화학 주식을 되사준 직후 성명을 통해 관련 주식거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LG그룹 총수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LGCI의 지분 중 832억원 상당의 지분을 임의무상소각하여 부당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LG측은 이 제안을 정식으로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10월 말, 참여연대는 99년 당시 LG그룹 지배주주들에게 LG석유화학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이사회에 참석했던 구분무 LG그룹회장을 비롯한 9명의 LG화학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주주모집에 돌입하였으며 12월 16일에는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사전절차로 LGCI에 소제기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재벌계열사들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부당한 거래에 동원될 수 있으며, 재벌기업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LG그룹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가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거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 아무리 긍정적인 목표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불투명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향후에도 참여연대는 지주회사 체제 이행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대주주 이익 챙기기를 위한 주식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6. SK그룹의 이면계약에 따른 거래 조사요청 등

○ SK그룹의 이면계약에 따른 거래 조사요청

지난 99년 SK증권은 JP모건과 역외펀드 손실에 대한 소송을 화해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당시 SK그룹은 JP모건이 소송합의조건으로 취득한 SK증권 주식 2,405만주를 SK글로벌의 두 해외현지법인이 되사주기로 한 옵션계약을 맺었으면서도 그동안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면계약에 따라 지난 10월, SK글로벌의 두 현지법인이 JP모건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SK증권주식을 되사면서 1,000여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위는 SK그룹이 SK 증권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현지법인을 동원한 것으로, 증권거래법상 공시위반 및 공정거래법상의 계열사부당지원협회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했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당시 SK글로벌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하였다.

○ 산업은행의 동부전자 신디케이트론 제공 모니터

동부그룹은 본격적인 반도체 사업 진출을 위해 2001년 11월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5,100억원의 신디케이트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동부그룹이 신디케이트론 제공의 계약조건인 3,500억원 상당의 외자유치를 전혀 이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이자 신디케이트론 주간사인 산업은행은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2002년 연말까지 500억원을 유상증자하면 잔여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하였다.

이후 동부그룹은 계열사인 동부화재와 동부생명, 동부건설의 출자를 통해 아남반도체를 계열사로 편입시켰고, 아남반도체는 다시 600억원을 동부전자에 출자하기로 하였다.

참여연대는 아남반도체의 동부전자 출자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신디케이트론 잔여대출금 인출조건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려는 것으로써 실질적인 자금조달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감사원에 산업은행이 동부전자에 대한 대출심사와 대출사후관리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 민영화된 KT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관개정안 제안

2002년 5월, KT민영화를 위한 정부보유주식의 매각 결과 11%가 넘는 지분을 매입한 SK텔레콤이 KT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정부는 매각이 끝난 직후 전환우선주 조항 및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특정 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KT 주식매각이 민영화 조기완료에만 조급한 정부의 자세로 인해 특정 기업이 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지적하며, 민영화된 이후의 KT의 지배구조를 선진적인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 과도한 경영권 보호의 지양과 합리적인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소액

주주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관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주총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지를 찾을 수 없이 법률상 의무만을 최소한으로 반영한 결과에 그치고 말았다.

○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재계의 왜곡 반박

98년 10월 참여연대가 소액주주 22명을 모아 제기했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2001년 12월 27일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뇌물공여, 부실기업인수, 계열사 주식 저가매각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삼성전자의 전·현직 이사들에게 총 977억여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내려진 직후부터, 전경련을 포함한 경제 5단체를 중심으로 한 재계와 자유기업원 등이 판결의 의미와 효과를 왜곡하고 나아가 소액주주의 권한 약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담회를 열어 이번 판결은 정당한 과정을 거친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그 결과를 두고서 책임을 묻은 것이 아니라 경영의사결정과정에서 적법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묻은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경영상의 판단 자체를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재계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 경제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뉴스메일 발송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2002년 2월부터 경제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부정기적으로 보내는 e-경제개혁 뉴스레터 발송을 시작했다. e-경제개혁은 경제개혁센터의 활동에 대해 경제전문가의 관심과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핵심 경제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과 센터의 활동을 소개하는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경제개혁센터는 이미 2001년부터 증권집단소송법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시민 등을 대상으로 경제뉴스메일을 발송 중이다.

■ 2003년

증권집단소송법, 입법 운동 3년 2개월만에 결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지난 2000년 10월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돌입했던 증권집단소송법 입법운동이 만 3년 2개월만에 결실을 맺었다. 증권집단소송법의 국회 통과는 재계의 극렬한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끈질긴 노력과 많은 시민의 호응에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소중한 것이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회에서 방치되다시피 했던 증권집단소송법은 지난 대선 당시 증권집단소송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2003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심의과정 역시 순조롭지 않았다. 소위원회 심의 단계부터 정부안만으로는 무고한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주장과 이미 과도할 만큼 남소방지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정부와 여야가 본회의 통과를 약속한 6월을 훌쩍 넘긴 7월에서야 소위원회 대안이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소송제기 요건에 지분을 보유 조건을 추가하고, 법 시행시기를 정부안보다 1년씩 늦추는 것이 대안의 골자였다. 참여연대는 소송 제기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소액다수의 투자자 구제라는 법안의 목적보다 재계의 요구 반영에 급급한 소위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법안의 훼손은 시작에 불과했다. 소위 통과 직후 손길승 당시 전경련 회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정책위의장을 만나 남소방지장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불과 1주일 후, 여야는 정책협의회의에서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한 법시행 유보 등 법안 수정에 전격 합의하여 재계의 전방위 로비에 굴복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증권집단소송법 자체를 사문화시키는 여야의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의견서와 면담 등을 통해 재계와 여야 일부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후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었다. 8월부터 12월까지 증권집단소송법은 법사위원회에 무려 네 차례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재계의 뜻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일부 의원이 이미 소위에서 수 차례 논의한 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담보제공 조항을 빌미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켰다. 참여연대는 법안 제정 자체에는 관심도 없이 개혁입법을 막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정치권에, 표결로라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호소하였다. 이미 증권집단소송법안은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어버렸지만, 법안의 시행 자체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과 자본시장 건전화 효과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참여연대의 연속 공개서한이 각 당 법사위 간사위원에게 발송된 2003년 12월 17일, 드디어 법사위는 전체회의 논의 다섯 번만에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5일 후인 12월 22일, 170명 표결에 167명 찬성, 3명 기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끝까지 논란이 되었던 담보제공 의무화 조항은 결국 포함되지 않았으나, 삼성전자 등 자산 총액이 큰 기업에 대한 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주식 1억원 이상 보유 조건은 삭제되었고, 시행시기 역시 6개월 연기되었다. 참여연대는 비록 법안의 내용에 대해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이 남지만, 일단 법안 통과 자체를 환영하며 향후 법안의 시행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는데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재벌그룹의 BW, CB 이용한 편법 기업지배권 승계 저지

2002년 말, 참여연대는 (주)두산이 99년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그룹 지배주주 일가의 증여 및 지배권 확대를 위해 편법적으로 발행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두산측은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나, 참여연대는 끈질기게 두산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그 결과 금감원은 BW의 발행과정상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고, 2003년 초 SK그룹 사태로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움직임이 일자 (주)두산은 스스로 지배주주 일가가 보유한 신주인수권 전량을 무상소각했다.

이후 참여연대는 (주)두산과 거의 동일한 사례를 현대산업개발(주)에서 발견하였다.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은 회사가 99년 5월과 8월에 발행한 해외BW의 대부분을 발행 직후 대량 매입했다. 특히 5월에 발행한 BW의 경우, 두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조정 조항이 있었다. 따라서 문제의 BW가 모두 행사될 경우, 정회장의 지분은 당시 9.7%에서 30%대로 증가하지만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렇듯 인수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BW를 발행 직후 정회장이 대량 보유하게 된 것은 경영권 획득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분 확대를 노린 의도적인 발행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실상 국내발행한 BW를 해외발행이라고 공시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와 행사가조정 조항에 대한 공시 부실을 지적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필요성과 회사의 자발적 조치를 촉구하였다.

참여연대의 문제제기 두 달 후, 현대산업개발은 행사가 조정 조항이 있었던 BW의 행사를 발행 당사로 환원하고 나머지 BW 중 정 회장 보유분을 무상소각하였다.

두산과 현대산업개발 사건을 계기로 참여연대는 그 밖의 기업에도 유사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각종 공시자료를 통해 상장기업의 BW, 전환사채(CB) 발행 내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45개 기업이 '리픽싱옵션부 BW나 CB'를 56회 발행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대주주 일가가 해당 사채의 다수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이들 기업이 모두 해외발행을 가장하여 국내발행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거나 대주주 일가가 특혜를 누리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금융감독당국의 조사를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BW, CB에 대한 기획검사에 착수하였으며, 검사 결과 21개 기업과 이를 주관한 5개 증권사가 불법·편법 리픽싱옵션부 BW, CB를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기업에는 과징금 등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참여연대가 지배주주 일가의 기업지배권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특혜성 BW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해온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은 행사가만을 환원한 채 계속 보유하고 있던 BW를 전량 소각하였으며, 동양메이저, 효성 역시 대주주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BW를 전량 무상소각하였다. 비록 문제의 BW 소각이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결과 및 제재조치가 나오기 불과 며칠 전에 이루어져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지만, 일단 특혜 시비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인 삼성그룹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에버랜드 CB 발행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며, 결국 검찰은 2003년 12월 1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당시 에버랜드 실무진을 기소하였다.

원칙이 실종된 정부의 카드사 대책 개선 요구

2003년 초,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수사 발표 이후 금융 불안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카드채가 편입된 투신사 펀드에 대한 환매요구가 쇄도하고, 채권시장이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간 소문으로만 돌던 이른바 카드발 대란의 시작이었다.

정부는 3월과 4월 잇달아 카드사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카드사 경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그간의 부실경영과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추궁도 없이, 5조원의 브릿지론과 카드채의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카드업계 전체를 살리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4.3 신용카드 종합대책 발표 직후 각종자료를 검토하여 정부가 조성한 브릿지론의 대부분이 재벌 계열카드사에 집중되었으며, 금융감독당국이 카드사의 경영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불법, 부실경영을 방조하였으며, CP 발행과 관련한 카드사와 투신사의 불법행위를 금융감독당국이 묵인함으로써 부실, 편법경영을 오히려 심화시켰음을 확인하고, 이를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카드사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채 문제가 모두 수습되었다고 강조하였으며, 심지어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는 "연체율이 30%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은 빗나갔다. 4.3 대책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3년 10월, 신용카드업계 1위인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다. 현금서비스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또다시 '카드사 구하기'에 나섰다. 시장의 원칙을 거스르는 정부의 압력에 채권 금융기관은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결

국 채권 만기연장과 출자전환에 동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사실상 단독관리의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카드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LG계열사들이 LG카드의 지원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스스로의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은 물론, 카드사 부실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채, 3조원이 넘는 부실 덩어리 카드사를 살리기 위해 급급한 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카드사 부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룹 계열사들이 카드사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 지원으로 계열사 임원들이 배임죄를 면할 수 없으며, 채권 금융기관이 이를 강요하는 것은 배임 교사죄에 해당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문제제기가 카드사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을 상당 부분 막아냈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카드사 대책으로 현재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관한 법과 원칙은 무너졌으며, 이해관련자간의 신뢰기반도 완전히 훼손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LG카드를 비롯한 카드사 부실의 처리비용을 더욱 크게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회생가능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일이다. 참여연대는 비록 사후적 조치이지만 무너진 법과 원칙, 그리고 신뢰를 회복시키기는 유일한 방법은 엄격한 책임추궁이라고 판단하고, 법이 허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관련자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SK그룹 부실 책임추궁 및 부당 지원 반대

2003년 1월, 참여연대는 SK증권에 지원하기 위해 SK글로벌(해외현지법인)과 JP모건 사이에 맺어진 이면계약 사건과 관련하여 최태원, 손길승 회장 등을 배임혐의로 고발하였다. 이후 검찰의 수사 결과 이면계약 외에도 SK글로벌의 천문학적인 분식회계와 오너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주식 스왑 거래 사실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SK사태는 비단 SK그룹의 위기뿐 아니라 1998년 소위 '대우사태'와 같이 한국경제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IMF 이후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이루었다는 재벌개혁에 대한 자부심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로 인한 여파는 SK글로벌 채권단이 SK그룹 계열사, 특히 SK텔레콤에 SK글로벌을 지원할 것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아무런 지분관계 없는 SK글로벌의 부실을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K텔레콤이 떠맡는 것은, 우량계열사가 부실계열사를 살려왔던 과거 재벌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SK글로벌에 대한 부당 지원을 강요하는 채권단의 요구를 거절할 것을 SK텔레콤 이사회에 강하게 요구했다. 결국 SK텔레콤 이사회는 SK글로벌에 대한 사업지원을 약속하는 확약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 최태원, 손길승 회장 등 주요 경영진 누구도 사태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2003년 6월, 형사재판 1심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손길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두 사람 모두 SK(주),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 이사직에 대한 거취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회사측 역시 불법행위의 최종 책임자들이 핵심 계열사의 경영진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2003년 연말에는 불법정치자금 폭풍이 재계와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이 사건의 출발은 공교롭게도 또다시 SK그룹이었다. 손길승 회장이 2000년 총선과 지난 대선 당시 뿌린 불법정치자금 100억 원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는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5대 그룹을 비롯하여 재벌그룹 전체로 번져 나갔고,

5개월이 지난 2004년 2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손길승 회장이 이사회에 승인없는 선물투자를 통해 SK해운에 7천억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부실기업에 2천4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SK해운의 세금 380억원을 포탈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결국 손회장은 2004년 1월 구속되었다.

그러나 최태원, 손길승 회장 모두 SK텔레콤 이사직만은 끝까지 물러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사회 결원으로 간주한다는 SK텔레콤의 정관이 무색해지는 상황이었다. 결국 참여연대는 2004년 1월 30일, 3월 12일로 예정된 SK텔레콤 정기 주주총회에서 두 이사의 사퇴권고안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 이사회가 참여연대의 주주제안을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한 2004년 2월 24일, 최태원, 손길승 회장과 최회장의 친인척인 최재원 부사장, 표문수 사장까지 사퇴의사를 밝혔다. 비록 참여연대의 주주제안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지만, 두 회장의 이사직 사퇴는 주주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참여연대는 향후 SK텔레콤 이사회의 향후 행보, 특히 최태원 회장의 직할체제 구축 시도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계약자 권익 보호 위한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마련 노력

한국의 대표적인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교보생명은 자산규모만 70조, 40조원대에 이르는 엄청난 기업이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지난 1990년 기업공개에 위해 자산재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절차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13년이 지나도록 상장을 하지 못한 상태다. 논쟁의 한 축인 생명보험 업계는 생명보험사가 명목상 '주식회사'이므로 주주가 아닌 보험계약자들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양심적 보험학자들은 우리 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이 형식은 주식회사지만, 실제로는 주주들이 부담할 경영위험이나 자금 조달 의무를 보험계약자들이 떠맡아 실질적인 주주의 역할을 해왔던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에게도 상장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몇 차례에 걸쳐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있었으나 양자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번번이 무산되었으며, 특히 경제부처 장관의 교체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등 여러 차례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런 와중에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신임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이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 해결을 공언하면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생명보험사 상장문제가 다시 표면에 떠오르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7월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에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상장 이익이 계약자와 주주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할뿐 아니라 주식배당을 통해 분배되어야 하며, 상장을 통해 생명보험사의 소유·지배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특정 대주주나 채권단을 위해 혹은 공적자금 회수라는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부 부처와 보험업계 등에 수차례 지적하며 사안에 밀착 대응하였다.

그러나 상장이익이 보험계약자에게도 배분되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상장자문위원회 안에서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분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교보생명은 총수의 사재 출연을 제안하여 사실상 보험계약자의 공로를 인정하였으나,

삼성생명은 상장 자체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계약자에 대한 어떠한 배분도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결국 금융감독위원회와 상장자문위원회는 약속한 시한인 8월을 훨씬 넘긴 10월 중순, 정부가 상장방안을 발표하더라도 해당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또한 정부안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상장방안 마련을 포기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13년간을 끌어온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마련은 또다시 결론을 맺지 못한 채 호지부지 덮여지고 말았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특정 업체의 반대를 이유로 상장방안 제시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직무유기임을 지적하며, 소신 없고 무책임한 태도로 생명보험산업과 보험계약자 전체에게 피해를 입한 금융감독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상장방안 마련 무산으로 1990년 이후 계속 유예되어온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의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문제와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2004년 초, 13년간 유예해온 법인세를 삼성생명 등에 부과하였으며,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아직 변제 받지 못한 1조 7천억원대의 손실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해 논의 중이다.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2심 승소

2003년 11월 20일, 서울 고등법원은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소액주주와 함께 제기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2심에 대해, 이견회 회장이 70억원, 삼성의 전현직 이사 5명이 120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은 지난 1998년 10월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을 원고로 삼성전자의 전현직 이사 11명에게 부당 행위와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으로, 2000년 11월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서도 이견회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들에게 총 977억원의 배상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견회 회장의 뇌물 공여건과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 매각, 이천전기 출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이견회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뇌물을 제공한 사실과 삼성그룹 계열사에 보유 중인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사실은 경영인으로서 주의와 충실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특히 뇌물 제공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비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사건 수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불법행위는, 설사 그로 인해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경영적 판단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재계가 주장하는 '보험성 정치자금'이란 개념은 불법행위에 있어 애초에 성립될 수 없음이 법원의 판시로 남게 되었다.

또한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 매각에 대한 배상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이용하여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편법적으로 상속을 하는 행위 또는 재벌총수들이 기업지배권 강화에 필요한 지분을 저가로 취득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비록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가치 평가라 할지라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한 것은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는 판결의 내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비상장주식거래 배임 문제나 삼성그룹 이재용씨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 사건

등 유사한 사례에 영향을 미칠 전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다. 특히 이천전기 인수와 관련하여, 1심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단 1시간의 토의만으로 부실기업인 이천전기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을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해태로 판단하여 27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데 비해 2심 법원은 이사들의 결정을 경영판단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배상액을 전액 삭감하였다. 2심 법원은 적극적으로 이사들의 주의의무를 강화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미흡한 경영관행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사고를 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결국 후자의 관점에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밖에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 매각 건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삼성전자의 이익 창출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총 손해액의 20%만 산정한 120억원으로 제한하여 1심에 비해 494억원이나 감액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2심 판결 이후 2003년 12월 말 피고측인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이 상고하였으며, 참여연대도 부대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지난 1월 16일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5명이 작년 12월과 올 초에 걸쳐 약 200억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2004년

불법정치자금 제공한 재벌 총수들 고발

SK그룹의 비자금 수사로부터 촉발된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통해 삼성, LG 등 최대 재벌들이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기업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 범위를 축소하였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방침을 강력히 비판하고 항의시위 등을 통해 기업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차떼기’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키며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불법정치자금 사건은 결국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와 사법부의 ‘경제기여도를 고려한’ 관대한 판결로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2004년 1월 15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구조본부장, LG그룹 구본무 회장과 강유식 구조본부장, SK그룹 김창근 구조본부장,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과 최한영 부사장 등 11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증권거래법 및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카드사 위기 땀질처방 반대, 책임자 책임 추궁

2003년 초 본격화된 카드사 위기는 결국 2004년 1월 정부의 관치금융으로 근본적인 수술 없이 미봉책으로 봉합되었다. LG카드사를 산업은행이 인수함으로써 채권단과 국민이 부실을 떠안은 반면, 잘못된 카드 정책으로 위기를 초래한 정부 정책책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방침에 항의하며 2004년 1월 20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카드사 위기의 원인과 책임, 처리방식의 타당성 등을 낱낱이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LG 전선 계열 구자열 대주주 외 특수관계인 24명을 2003년 1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LG카드 주식을 미리 처분한 혐의로 고발하였다.

2004년 7월 16일 감사원의 카드대란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카드 대란의 모든 원인을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의 문제로 돌려, 400만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는데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결론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또한, LG 카드사의 부실이 계속 늘어나자 정부는 또다시 채권단과 LG계열사들의 팔을 비틀어 LG카드사에 자금을 지원했다. 카드사 부실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시장의 불확실성과 부실처리 비용만 증가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폭행으로 얼룩진 삼성전자 주주총회

2004년 2월 27일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참여연대는 주주총회에서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던 이학수 이사의 재선임에 반대하고, 2003년 부실한 삼성카드에 대한 출자 결정의 타당성 및 향후 계획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참여연대 주주의 의사진행발언을 포함하여 발언권 자체를 봉쇄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주주에게 윤종용 회장이 폭언을 하고 주총장에서 퇴장하는 주주들에게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3월 4일 주주의 정당한 발언권 행사를 봉쇄하고 편파적으로 의사를 진행하여 이끌어낸 결의는 법적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질의권 봉쇄 등에 따른 주주권 침해와 명예훼손, 폭행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하였다.

SK 텔레콤 주주총회

2004년 3월 12일 SK 텔레콤 주주총회가 열렸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1월 30일, 2003년도에 SK 네트워크 분식회계 및 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최태원 이사와 손길승 이사의 사퇴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주주제안했다. 이 주주제안은 수용되지 않았으나 회사 측은 2월 24일 손길승 회장, 최태원 회장, 표문수 사장, 최재원 부사장 등 총수 일가의 동반사퇴를 결정하고 전격 퇴진하였다.

삼성 에버랜드, 금융지주회사 요건 갖춰

참여연대는 삼성 에버랜드의 2003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통해,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가액이 에버랜드 자산 총액의 54.7%에 달하여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에버랜드는 금감위로부터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지 않음으로써 금융지주회사법 3조 인가 규정을 위반한 상태였다. 이에 2004년 4월 7일 참여연대는 에버랜드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하고 관계자를 처벌할 것을 금감위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금감위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시정명령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에버랜드 측에 2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해소할 것을 권유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또한 형사 처벌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유보했다.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회계처리할 경우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가액이 에버랜드 자산총액의 절반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지주회사 문제가 해소되었다. 이렇게 해서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를 벗어났으나, 2004년말에 또다시 삼성생명 주식이 에버랜드 자산총액의 50%이상을 점하게 되었다. 에버랜드 측은 삼성생명 주식을 신탁하는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금감위와 공정위는 신탁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각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004년 결산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

결하지 않는다면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로서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근본 배경은 삼성그룹이 비상장 가족기업인 에버랜드를 핵심고리로 해서 그룹 전체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에버랜드가 직접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등의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삼생생명이라는 금융회사를 끼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버랜드는 자산 부채를 조정하는 편법을 통해 이 문제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글로벌 기업에 맞게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금감위에게 삼성은 성역인가

위와 같이 삼성이 법을 위반하고도 감독당국의 적극적 의지 부족으로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간 사례가 또 하나 있다. 2004년 7월 2일 금감위는 98년과 99년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계열사 주식 취득과정에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예안법(금산법) 24조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현행 금산법에 시정명령권이 없고 삼성카드가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7월말까지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사례인 동부화재 및 동부생명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금감위는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계열사인 아남반도체 주식을 초과 취득한 것에 대해 기관 경고 및 임원 경고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삼성카드는 스스로 초과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금융지주회사법과 금산법상 시정명령권을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고, 현재 정부에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재계의 총공세로 후퇴하는 재벌개혁

2004년 5월 공정위의 시장개혁로드맵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제정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재계는 개혁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정부와 여당은 결국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많은 예외와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규제도 3년에 걸쳐 15%까지 축소하고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안을 확정하였다. 애초 김대중 정부 말기 대폭 후퇴한 재벌개혁 정책들을 복원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재계의 로비에 밀려 후퇴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회로 넘어가서는 야당의 반대로 계속 통과가 지연되었다. 결국 여당의 단독 처리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겨우 통과했다.

이와 같이 장기적인 경기침체 상황을 악용하여 재계가 반개혁적 조치들을 요구하며 공세를 펴고 야당이 이에 적극 동조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마저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각종 재벌개혁 정책들이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증권집단소송법도 과거 분식을 해소할 시간을 달라는 재계의 압력에 밀려 다시 시행이 유예될 위험에 처해 있다.

■ 2005년

삼성보고서 발간

이건희 회장의 고려대 철학 명예박사 학위 사건, 삼성의 공정거래법 제11조(계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위헌 소송 제기,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논란 등 삼성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삼성공화국’ 논란이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호들갑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문제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게임의 룰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에서 게임의 룰을 정하는 권력집단으로 변해버린 삼성에 대해 사회전반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졌으나, 정작 누구도 삼성의 위력에 눌려 제대로 된 문제제기조차 해내지 못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이처럼 삼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삼성그룹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하고, ‘삼성공화국 현상’에 대한 진단과 성찰, 그리고 대안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의 마련을 위해 삼성의 경제사회적 지배력, 정관법조계 인맥의 실체, 언론과의 관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기로 결정하였다. 이른바 ‘삼성보고서’는 2005년 8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 「X파일이 1면에서 사라진 이유: 4대 재벌과 언론에 관한 보고서」, 「사이비 민족주의에 기댄 삼성 :과장과 논리비약의 삼성전자 적대적 M&A 위협론」의 주제를 다루며 발간되었다. 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기대이상이었다.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언론의 취재가 잇달았고, 국정감사 때 의원들의 질의에 자주 인용되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삼성측의 반응이다.

삼성은 삼성의 ‘인력독점’의 문제점을 지적한 첫 번째 보고서가 나온 직후 무분별한 정관법조계 인사들의 영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2006년 2월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여 그동안 삼성에 대해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비판을 인정하고, 약 8,000억원을 재단에 출연하는 것과 함께, 구조조정본부 축소 및 금융계열사 사외이사 확대 등의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였다.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승소

2005년 10월 28일, 대법원은 지난 1998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와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이견희 회장 등 전·현직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과 관련, 19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을 확정하였다. 1998년 소송 제기 이후 장장 7년만의 일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비자금 조성 및 불법정치자금 제공,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명백한 불법 행위는 경영상의 판단으로 존중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경영진이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최종 확인해줌으로써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주었다. 특히 대법원은 이견희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전액 배상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 비록 관행이었고 설사 그로 인해 기업이 이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형법상 불법 행위는 경영판단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근절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인 삼성중합화학 주식의 저가 매각에 대해서도 상증세법상 보충적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매도 가격을 결정한 것은 이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치에 대하여 최소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삼성그룹 뿐 아니라 SK, 현대차그룹 등 재벌그룹의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편법 상속 논란과 비상장주식의 적정한 가치 산정 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왜곡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2006년 4월 1일 현재 삼성그룹의 전체 납입자본금은 11조 6293억원으로 이중 동일인인 이건희 회장 0.29%, 이재용 씨를 비롯한 친인척 0.56%, 계열사 48.52% 등을 합하여 내부지분율은 51.61%에 이른다. 삼성의 5개 계열 금융기관들은 26개 삼성 계열사에 1조 2682억원(납입자본금기준)을 출자하여 계열사 지분의 16.3%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에서 나타나듯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핵심은 계열사, 특히 금융계열사의 순환출자를 통한 주력 계열사의 지배이다. 특히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이처럼 금융자본(삼성생명)을 통해 산업자본을 지배(삼성전자/삼성물산)하고 기업집단을 유지하고는 있는 지배구조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규정한 금융법 질서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2005년은 삼성의 지배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모순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활동 사이의 힘겨루기가 최정점에 올라선 해이다. 2005년 7월 6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에 대해 윤증현 금감위원장 및 삼성계열 금융기관임원을 각각 직무유기와 금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 정부의 승인없이 삼성에버랜드 지분과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여 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해야할 금융감독당국이 오히려 삼성을 변호하며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지분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발에 앞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법위반 금융기관에 매각명령등 시정조치권을 도입하고 이를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법위반에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고 2005년 내내 이의 입법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05년 4월 20일, 이건희 회장은 돌연 삼성에버랜드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경영에 전념하고,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 이라는 해명과 달리 실제로는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회계처리 방식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기에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회계변경의 타당성을 문제제기하며 2006년 4월 10 일 삼성에버랜드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 관련 감리요청을 했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회계처리 변경의 적절성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금융자본을 이용하여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삼성의 왜곡된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노력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캠페인

무기제로 박승호

무기제로는 전쟁수혜자들, 전쟁으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산업체들을 견제하고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화활동가들의 네트워크 모임이다. 무기제로는 지난 몇 년간 확산탄 금지운동에 집중해오고 있는데, 올해 한해 동안은 국민연금이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를 촉구하는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캠페인

무기제로는 2013년 상반기 동안 13개 단체와 연대하여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확산탄과 같은 비인도무기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가 중단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1) 국민연금이 확산탄 생산기업인 한화, 풍산에 투자를 철회한다", "2) 국민연금이 비인도무기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배제를 천명하는 윤리투자원칙을 제정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캠페인의 주요한 활동으로는 확산탄 세계투자 보고서 발췌 번역, 기자회견, 공개질의서 제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대상 탄원활동, 국민연금 주요 지사 앞에서 거리캠페인, 캠페인 리플렛 및 영상물 제작 배포 등을 진행했다.

왜 투자철회 캠페인인가? 왜 국민연금인가?

확산탄 캠페인에 있어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확산탄의 수요자/사용자인 국가이며 다른 한 축은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들이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의 요구가 확산탄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확산탄 오염지역을 정화하고 피해생존자들을 지원하라는 것 등이 주를 이룬다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요구는 확산탄의 생산·수출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확산탄을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전력으로 여기고 있으며 국제적인 확산탄 불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확산탄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무기제로는 국가를 대상으로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보다는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확산탄 생산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확산탄이라는 무기에 대한 대중적 낙인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확산탄 금지운동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중에서 한화와 풍산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은 쉽지 않아 보였다. 한화와 풍산을 대상으로 어떤 캠페인을 벌여도 이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윤리적인 비난만으로 핵심 사업을 정리할 것 같지는 않았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보다 더 효과적인 방식은 바로 돈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고, 이 점에서 투자철회 캠페인은 상대적으로 더 승산이 있는 캠페인이었다. 국민연금이 각각 한화 주식의 7.34%(2011.12), 풍산 주식의 9.26%(2012.9)를 보유하고 있는 확산탄 생산기업의 최대투자자라는 점, 또 공적자금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 일정액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확산탄 투자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국민연금이 투자철회 캠페인의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무기제로의 과거 캠페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확산탄이 어떤 무기인지, 왜 확산탄이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사실상 전무했다. 확산탄이라는 특정한 무기를 금지하자는 캠페인의 슬로건이 대중의 관심을 얻기 힘든 주제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국민 대다수가 자의든 타의든 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당신의 돈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차별 살상무기를 만드는데 쓰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과, 확산탄의 비인도성에 대한 낙인화를 동시에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외 확산탄 투자철회 캠페인 사례

이번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캠페인은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투자철회 캠페인을 모델로 한 것이다. 현재 국제적인 확산탄 금지운동을 이끌고 있는 곳은 확산탄금지연합(Cluster Munitions Coalition)이라는 국제 연대체인데, 확산탄금지연합은 현재 "Stop Explosive Investments"라는 하위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확산탄금지연합의 회원단체 중 IKV 팩스 크리스티와 Fair Fin이라는 두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 두 단체는 2009년부터 매년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 8대 확산탄 생산기업(한화와 풍산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현황과 이와는 반대로 확산탄 투자금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금융기관들의 현황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의 발표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지에서 확산탄 투자철회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기제로 역시 이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투자철회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확산탄 투자철회 캠페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네덜란드와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려 한다.

- 네덜란드 연금기금 투자철회 사례

2007년 3월에 네덜란드 시사프로그램인 Zembla는 네덜란드 유수의 연금기금이 확산탄, 지뢰 등 비인도무기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 등 네덜란드 연금기금의 비윤리적 투자 문제를 다룬 Cluster bomb feeling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 당시 방송을 통해 연금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게 된 대중의 분노가 표출되면서 연금기금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압력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다큐 제작 과정에 관여했던 시민단체인 IKV Pax Christi는 다큐 방영 이후 연금 기관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다. 금융기관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사회적 이미지 실추"라는 점을 활용한 것인데, 2011년 유럽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서 거의 80%의 투자자가 논란이 되는 무기에 대한 투자가 명성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인식의 변화가 눈에 띄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2009년 팩스 크리스티는 Fair Fin과 공동으로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 보고서를 발표했고, 보고서 발표의 영향으로 연금 기금이나 금융기관들이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팩스 크리스티는 이뿐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과 관계를 맺고 확산탄 투자 금지를 입법화하기에 나선다. 2009년에 네덜란드 의회가 확산탄 투자 금지 촉구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당시 과도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이후 확산탄금지협약 비준 등을 거치면서 상원에서 다시 한번 확산탄 투자 금지 제안이 상정되었고 2011년 말, 정부가 이를 이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확산탄 투자 금지는 2013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 다큐가 방영되고 반향을 일으켰던 시점이 아직 확산탄금지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다큐멘터리 방영으로 국민적 분노가 격화되면서 향후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연금의 투자철회 결정뿐 아니라 네덜란드가 확산탄금지협약에 서명하는 등 확산탄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 영국 스코틀랜드 왕립 은행(RBS) 투자 철회 사례

2011년 8월, 앰네스티 영국지부가 팩스 크리스티 보고서를 바탕으로 HSBC, 스코틀랜드 왕립 은행 등 주요 은행에 대한 투자 철회 캠페인(온라인 탄원)을 시작했다. 캠페인 시작 1주일만에 스코틀랜드 왕립 은행이 확산탄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된다. 당시 이 은행은 앰네스티 회원들로 부터 12,000통의 이메일을 받았으며, 앰네스티가 진행하던 전국적인 광고 캠페인 등에 이미지 손상을 두려워 했던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본 우리의 투자철회 캠페인

투자철회 캠페인은 기업들이 '이미지'를 중요시 여긴다는 점에서 가능한 캠페인이다. 위에서 다룬 두 사례는 각각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방송(네덜란드 시사프로그램 Zembla)과 시민단체(앰네스티 영국지부)가 자국 금융기관(연금기금)이 국제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는 비인도 무기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대중적인 단죄 또는 낙인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레 투자철회가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내 돈"이 잔인한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확산탄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해당 국가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이 문제를 공공의제로 만들어 냈고, 이후 여론을 등에 업고 금융기관을 압박해 실제 투자철회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한국에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캠페인은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아직 캠페인이 시작단계에 있으며 해외 사례와 같이 대중적 영향력이 큰 매체가 이 문제를 다루는 등의 이슈 확산의 계기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은 캠페인의 성과를 이야기할 시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확산탄금지협약에 서명·비준한 유럽의 경우와는 다르게, 한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확산탄의 생산, 배치를 고집하고 있으며 평화, 무기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역시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무기제로는 올해 12월 발표 예정인 "확산탄 세계투자" 보고서의 번역 발표 등 지속적 캠페인을 통해 국민연금의 확산탄 투자문제를 꾸준히 제기할 계획이며, 적절한 타이밍에 대중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내는데 주력해 한화 풍산에 대한 투자철회 및 확산탄에 대한 낙인화 등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참고

<http://stopclustermunitions.org/>

<http://www.stopexplosiveinvestments.org/>

<http://wzero.org/>

팔레스타인 가옥을 파괴하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이콧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나눔

1. BDS 운동 소개

1967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이후 팔레스타인 내부 혹은 국제적으로 다양한 방법의 운동이 생겨나고 소멸했습니다. 무장투쟁, 비폭력 투쟁, 정당 운동 등 다양한색의 전술이 구사되어왔고 현재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 BDS 운동이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전술이며, 국제적으로 연대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2005년 시작된 BDS 운동은 과거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를 종식시키기 위해 사용된 보이콧 방법을 참고해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만들어진 다각적 보이콧 전술이며, 소비자 차원(상품, 문화교류 포함)의 불매운동인 **Boycott**, 기업의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Divestment**, 국가차원의 제재 **Sanctions** 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수없이 위반하고 팔레스타인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경제는 주로 해외기업 및 국가의 투자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BDS는 팔레스타인 내 점령지에서 생산되는 비인도주의적 상품들과 점령에 일조하는 군수산업에 편당하는 기업자본, 국가연기금 등에 대해 보이콧하고 넓게는 아카데미 보이콧까지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국제적인 고립입니다. 그렇기에 이 전술은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바꾸고, 다각적인 형태로 이스라엘을 압박해 궁극적으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령을 그만두게 만드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보다는 국제적인 연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제 평화, 인권, 종교, 학술 단체들이 BDS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저희도 재작년부터 이 전술을 채택하였습니다.

2. 팔연대의 현대중공업 보이콧 캠페인

- 현대중공업의 굴삭기가 팔레스타인의 동예루살렘에서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 가옥을 부수고 거주민들을 난민화시키는 이스라엘의 점령에 일조하고 있다고 판단. 2012년부터 BDS운동의 일환으로 현대 보이콧을 진행. 현대중공업에 공식적 메일을 보내고, 성명서 발표, 기사 송고, 거리 캠페인, 영상배포 등(본격적인 보이콧은 10월 이후 진행예정)

-목표

- 1) 현대중공업의 이스라엘에 대한 굴삭기 판매를 완전히 중단하게 만든다.
- 2)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옥, BDS, 점령에 대한 대중인식을 높인다.
- 3) 현대중공업(혹은 여타의 다른 기업들)을 압박해 미래에 더 책임감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 4) BDS운동에 많은 한국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슬로건 : 현대! 이윤보다 팔레스타인 인권을!

-가능한 행동들 : 현대하청노동자들과 연대, 금속노조/민주노총과의 만남 및 평화단체들과 연대테이블 구성, 정몽준(최대주주) 상대로 투자철회요청, 아랍현지의 현대중공업 수출 현황 파악 및 현지에서의 압박(아바즈 서명운동 등)